

SAe.a.6

8·15 50주년, 조국의 평화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한

민족대토론회

일시: 95년 8월 14일(월) 오후 2시
장소: 8·15민족공동행사 본대회장



주최: 8·15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북, 해외 준비위원회 공동합의문

남과 북, 해외 준비위원회는 통일을 열망하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모아 8·15 50주년이 되는 올해 8·15를 계기로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 해외 준비위원회는 민족공동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민족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민족공동행사는 1995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남, 북, 해외가 함께하는 공동행사는 8월 15일 한다.
3. 민족공동행사의 3자 공동행사는 판문점에서 하며 그 밖의 행사들은 남, 북, 해외가 각기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측 지역에서 진행한다.
4. 민족공동행사의 명칭은 행사의 계기와 가족적 성격, 통일지향의 뜻을 담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한다.
5. 남, 북, 해외가 함께하는 공동행사로서는 개·폐막식, 통일음악회와 사진 및 미술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와 단체별, 부문별 행사로 한다. 이와 함께 공동행사의 하나로 '통일대토론회' 또는 '대민족회의'를 가진다.
6.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에 범민련 남측본부를 참가시킨다.

1995년 7월 21일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조국해방 50돌 경축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
8·15 조국해방 50주년 민족공동통일대축전 해외준비위원회

인권 자료실		
등록일	구분	자료번호
		26

제 1 부

8·15 50주년 민족통일대토론회

제1주제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당위성

정 기 열 (8.15 조국해방 50주년 민족공동 통일대축전 해외준비위원회 공동사무국장)

제2주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하여

노 정 선 (연세대학교 교수)

제3주제 통일의 원칙과 방도

박 순 경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제4주제 일제 잔재의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정립

김 봉 우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토 론

박 원 순 (변호사,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부집행위원장)

이 미 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박 종 구 (우리찾기모임)

이 삼 성 (한림대학교 교수)

- 참 고 자 료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과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2. 연방제의 이해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제 2 부

조국의 평화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하여

1.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 1) 경 남 김 영 만 (민주주의민족통일경남연합 상임의장)
- 2) 여 성 김 숙 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위원회 부위원장)
- 3) 학 술 양 재 혁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대표)
- 4) 호 남 한 규 채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공동의장)
- 5) 진 정 추 노 회 찬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대표)
- 6) 청 년 유 기 흥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의장)
- 7) 제 주 한 석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제주지역 준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8) 민족단체 오 정 운 (저레모임동맹 대표)
- 9) 총 청 김 용 우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대전충남준비위원회 상임대표)
- 10) 부 산 배 다 지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부산준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2. 조국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 1) 학 생 정 태 흥 (한국 대학 총학생회연합 의장)
- 2) 강 원 김 한 성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원주시지부 부의장)
- 3) 교 사 정 해 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4) 문 화 박 인 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처장)
- 5) 경 기 박 우 석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공동의장)
- 6) 종 교 명진스님 (실천불교승가회 부의장)
- 7) 노 동 허 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통일특위 위원장)
- 8) 의 료 임 종 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초대회장)
- 9) 농 민 홍 번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 10) 서 울 심 성 구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서울준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남북해외 동포에게 드리는 글

제 1 부

제1 주제

조국통일의 당위성을 다시 생각한다

정 기 열

8.15 조국해방 50주년 민족공동 통일대축전 해외준비위원회 공동사무국장¹⁾

당위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이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국통일문제는 이제 당위론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주의적으로 논의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은 지난 80년대 후반기부터 남(한국)²⁾의 통일운동내부에서 되풀이하여 논의했고³⁾, 대중들에게도 그만하면 충분하게 알렸으니, 이제는 그만 접어두고 통일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방법론적 접근⁴⁾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오늘 남(한국)의 통일운동 내부에서

1. 이 글은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의 집단적 토론을 거쳐 미주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인 한호석씨가 대표 집필한 것임을 밝혀둔다.
2. 해외동포인 나는 남(한국)과 북(조선)을 둘로 갈라진 두 나라가 아니라 통일되어야 할 한 조국이라고 인식하는 통일민족주의적 조국관을 지니고 있음을 여기에 밝히고 싶다. '한국'이나 '조선'이라는 분단국가의 이름은 분단 국가주의적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남한-북한'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라는 단일한 국가적 실체성 위에서, 그리고 '남조선-북조선'이라는 개념은 '조선'이라는 단일한 국가적 실체성 위에서 분단상태를 표현한 정치적 개념이며, '남(이남)'이나 '북(이북)'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방위를 구분한 분단지역을 나타내는 공간적 개념이므로 이를 모두 피하고 이 글에서는 하는 수없이 남(한국), 북(조선)이라는 용어를 잠정적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분단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로 드러나고 있음을 느낀다.
3. 1980년대 후반기 뒤로 남(한국)의 통일운동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통일의 당위론은 주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선언적으로 천명되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다시 확인된 조국통일의 3대 원칙 곧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관련한 논의와 더불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한국)의 통일운동은 통일의 당위론이나 통일의 원칙론에 관한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통일의 방안과 경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통일운동의 커다란 진전이다.
4. 통일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방법론적 접근이란 구체적으로 조국통일의 방안과 경로에 관한 논의 실천을 뜻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연방주의 통합론, 기능주의 통합론, 수렴통합론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연방주의와 수렴론을 절충한 접근법, 연방주의와 기능주의를 절충한 접근법, 기능주의와 수렴론

통일문제를 현실주의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조국통일의 당위성을 더이상 토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대중에게 더이상 전파 선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이한 발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이한 발상은 당위성(론)고 현실성(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당위성 논의의 단계와 현실성 논의의 단계를 시기적 선후문제로 보는 논리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이 이분법적 논리는 통일문제를 변화하는 통일정세에 맞게 포괄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주관주의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

우리가 통일정세를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주객관적 요인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통일의 현실론은 말할 것도 없고 통일의 당위론도 정세변화의 객관적 요구에 맞게 그 때마다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의미를 제시해야 할 능동적인 임무수행을 떠맡게 된다. 남(한국)사회의 반복세력은 변화발전하는 통일정세에 발맞추어 반통일론의 당위성이나 흡수통합의 당위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줄기차게 선동 선전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운동은 이에 대한 논리적 실천적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대중에게 당면 통일정세에 맞게 통일의 당위성을 올바르게 선전할 수 있고, 반통일론과 흡수통합론을 반대 배격할 수 있는 이론적 형식과 내용을 갖추게 된다. 오늘 우리가 통일의 당위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차승인구도의 완성과 조국통일의 당위성

(1) 올해 1995년은 해방-분단 50돌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국통일에 대한 전민족적인 관심과 열의가 어느 때와 달리 높아졌다. 여기에 더하여 이른바 '핵문제'가 경수로 합의로 돌파구를 찾게 되면서 조-미 관계 개선, 조-일 관계개선이 현실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조-미, 조-일 관계개선은 남(한국)과 북(조선)에 대한 주변 4나라의 교차승인구도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⁶⁾ 이것은 냉전질서 해체기 초입에 북방 2나라(중국과 러시아)가 남(한국)을 국가로 승인하고 외교통상을 증대시킴으로써 생겨난 남북의 외교적 불균형상태를 남방 2나라(미국과 일본)가 북(조선)을 국가로 승인하고 외교통상을 증대시킴으로써 균형상태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한(조선)반도 주변정세의 불균형, 불안정한 상태가 힘의 균형을 찾는다는 말은 남(한국)-북(조선)관계의 분단유지적 균형과 안정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게 되며, 그만큼 분단체제를 장기화, 고착화시키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작용은 조국통일운동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가 불안정한 분단체제에서 안정된 분단체제로 차츰 전환되는 국면으로 들

을 절충한 접근법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5. 1970년대에 교차승인안을 처음으로 유엔의 정치무대에 내놓은 것은 미국이었고, 이어 남(한국)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원래 북(조선)은 교차승인을 분단고착화방안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반대한 바 있다. 그렇지만 탈냉전시기에 들어서면서 외교적 균형이 깨지고, 북(조선)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이 크게 축소되었을 때, 남(한국)정부와 미국은 유엔을 무대로 교차승인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을 추진했고, 북(조선)이 이를 반대하자, 나중에 가서는 남(한국)단독가입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므로, 북(조선)은 결국 동시가입안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 교차승인구도의 완결을 분단고착화, 분단영구화의 길로 보는 까닭은 이 구도의 완결을 추진하는 세력이 기본적으로 '두 코리아정책'(Two-Korea Policy)을 추구해왔던 세력이기 때문이다.

어서면 결국 조국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지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⁶⁾ 안정된 분단체제는 남(한국)사회에서 통일불가론, 또는 통일회피론의 반통일적 명분, 곧 분단영구화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강화시켜주는 객관적 조건으로 탈바꿈하면서 통일운동의 진전을 가로 막는 역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교차승인구도의 완결로 인해 형성되는 안정된 분단체제에 대응하는 조국통일운동의 당면임무는 통일불가론, 또는 분단영구화 불가피론의 반통일적인 명분을 배격하고 대중에게 조국통일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조국통일 무용론, 흡수통합 불가피론, 분단체제 안주론에 대한 대응

(1) 오늘 남(한국)사회에서는 북(조선)이 이른바 외교적 고립, 정치적 불안정,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체제방어를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체제방어에 전력을 쏟고 있는 북(조선)에게는 사실 조국통일에 기울일 역량이 없으며, 북(조선)이 이른바 한-미-일 공조체제의 '개방공략'에 힘겹게 맞서서 자신의 불안정하고 허약한 체제를 유지하려면 통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부담을 피하고 차라리 분단의 고착화, 영구화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소한' 북(조선)이 '강대한' 남(한국)의 흡수통합 공세 앞에 빗장을 걸고 '조국통일의 문'을 잠그고 있다는 주장이다. 바로 이러한 대북관, 대북인식에서 조국통일운동 무용론이 나온다. 통일의 대상이며, 조국통일의 한 주체인 북(조선)이 실제로 통일을 추구할 수 없는 탈진상태에 있으며, 또한 통일을 추구할 의사조차 포기했는데, 우리가 조국통일운동은 해서 뭐하나 하는 허무주의적 관점, 패배주의적 관점이 스며드는 것이다. 설사 이러한 조국통일운동 무용론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부정적인 대북관과 대북인식 때문에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국통일운동 무용론과 불안감은 북(조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과 연구성과의 부재 때문에 생겨난 공간속으로 교묘하게 파고 들어온 반복세력의 이데올로기적 왜곡선전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반복세력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지난 반세기 동안 확대재생산해 오면서 전파력, 설득력을 발휘하며 우리의 조국통일운동에 도전하고 있으며, 대중들의 의식 속에서 조국통일의 당위성을 탈취해가고 있다.

(2) 다른 한편으로는 북(조선)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머지 않아 와해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정치인은 북(조선)의 현실을 '상처입고 쫓기는 짐승'에 비유하기도

6. 교차승인구도의 완결이 부정적인 여건만을 형성한다고 보아서는 안되며, 긍정적인 여건을 형성할 수 있다고도 보아야 한다. 즉 북(조선)의 외교력과 통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내부와해 압박론 같은 반복세력의 '이데올로기적 기대망'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 불안정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해온 현 정전협정을 안정적인 평화체제(이를테면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한 조-미 평화조약 및 남북 불가침 선언)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남(한국), 북(조선), 주한미군의 군비 동결 또는 군비축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만일 한(조선)반도에서 평화와 군축이 진전된다면 그것은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교차승인구도의 완결이 통일운동의 진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아니면 유리하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통일운동의 주체역량이 전민족적으로 단결된 역량을 발휘하면서 통일정세의 변화를 주도하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 질적 변화를 겪고 있는 현시기 통일정세를 통일운동의 진전에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문제는 통일운동의 주체적 조건과 역량에 달려 있다.

했다. 이들은 남(한국)은 날로 강성해지고 있고, 북(조선)은 날로 쇠잔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극단적인 대비의 이분법으로 갈라놓는 발상이다. 이 발상은 독일의 흡수통합,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몰락, 중국 사회주의의 혼란, 미-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분열과 침체현상등을 배경으로 삼고, 이러한 외부변화를 남북관계에 여과없이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다. 반북론자들은 날로 강대해지고 있는 남(한국)이 현재 북(조선)을 흡수통합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아직 그렇게 할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어차피 무너져가는 북(조선)을 자신의 체제 안에 점진적으로 유도 편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상상도를 그리고 있다. 이것이 흡수통합 불가피론의 중심주제다. 이 논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흡수통합론자들의 이데올로기적 기대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들은 대중에게 흡수통합 불가피론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흡수통합론자들은 조국통일의 당위성을 흡수통합의 불가피성으로 왜곡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조국통일운동 무용론이나 불안감, 흡수통합 불가피론은 언제나 북(조선)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전제가 어디까지 사실인가를 검토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 검토1 : 탈냉전시기의 외교적 고립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북(조선)의 외교노선이 자주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탈냉전 시기의 북(조선)은 독일의 흡수통합,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몰락, 한-중 수교와 한-소 수교라는 외부변화로부터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외부충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1960년대 이후 30년 동안 축적해온 자주외교의 정당성을 더욱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북(조선)은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미-일 공조체제의 드센 압력에 자주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결국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협상자리에 끌어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냉전 시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강력한 냉전적 봉쇄조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북(조선)의 자주외교는 지금 고립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화발전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 검토2 : 김일성 주석의 '급서'⁸⁾때문에, 후계체제가 정치적 불안정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급서 직후 일부 서방언론들은 북(조선)을 '머리없는 야수'라는 선정적인 비유로 모욕했고, 남(한국)의 반북론자들은 '조문파동'을 일으켜 최고지도자를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북녘 동포들을 크게 자극했다. 우리는 급서 직후 얼마동안 이른바 쿠데타 발생설 같은 유언비어가 남(한국)과 서방의 언론에서 버젓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다. 그러나 급서이후 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이러한 억측과 선정적인 유언비어들은 결국 북(조선)이 정치적 불안정에 빠지기를 바라는 반북론자들의 '이

7. 김남식, "동구의 충격, '주체사상' 변할 것인가", 역사비평(1990년 가을호), 20쪽에서 "모든 것을 '우리 식'대로 한다는 북한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건설은 소련, 동구와 같은 외적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발전은 그들의 내적 논리에 의해서 계속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한 것은 올바른 지적이었다.
8. 북(조선)에서는 '서거'라고 하고, 남(한국)에서는 대체로 '사망'이라는 용어를 쓴다. 1994년 7월 뒤로 일어난 이른바 반북론자들의 '조문파동'과 더불어 이말은 분단의 대결상황 때문에 가장 민감한 정치적 용어가 되었다. 남(한국)의 민족민주운동 대표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은 공식문건에 '급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글에서도 그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데올로기적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객관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서방 관측통들과 북(조선)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일 '영도자'⁹⁾를 정점으로 한 혁명 2세대가 이끌고 있는 후계체제는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외부 관측통들은 북(조선) 후계체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혁명 2세대는 지하공작경험과 군사경험이 많았던 항일유격대 출신 혁명 1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정치경험과 전문지식이 더 풍부하다고 보고 있다.

• 검토3 : 에너지난과 식량난이 물고 온 경제난과 사회주의 제도의 내부모순에서 비롯되는 경제난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북녘 동포들은 지금 '하루 한끼먹기운동'으로 휘청거리고 있다는 강명도-이찬삼 류의 '악성유언비어'가 남(한국)사회의 대북인식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식량폭동설이 드물지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경제난발생설은 곧 체제 붕괴 임박론, 내부와해 임박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조선)에서 에너지 사정과 식량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데, 현재 반북론자들은 에너지-식량의 상대적 부족이 아니라, 절대적 부족을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와 식량의 상대적 부족을 절대적 부족이라고 왜곡하면서 이제 북(조선)은 사회전체가 무너져가는 총체적 위기에 몰려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역시 북(조선)이 빨리 망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반북론자들의 '이데올로기적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북(조선)의 에너지난과 식량난에 대하여 말하자면, 지난 전후복구시기가 오늘 보다 더욱 심각했다. 전후복구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회주의 건설에 땀을 흘렸던 세대들이 오늘 북(조선)을 이끌고 있는 주도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조선)인민에게 전후복구시기와 냉전적 봉쇄조치의 기나긴 난국을 헤쳐온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강인한 사회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에너지-식량의 부족은 총체적 위기로 전화될 수 없다는 것이 이데올로기적 기대를 벗어난 자리에서 북(조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¹⁰⁾ 이들은 에너지-식량의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난 반세기 동안 북(조선)이 겪어온 일로서, 북(조선)의 체제는 에너지-식량에 대한 봉쇄조치와 상대적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립경제의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조국통일운동 무용론이나 흡수통합 불가피론이 의존하고 있는 전제들에 대하여 결론을 맺는다면, 북(조선)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조국통일의 과업을 포기하거나 무기한 뒤로 미루어 둘 만큼 체제유지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한미군 즉각 철수론에 대한 유보의사 표명, 한-미 군사동맹조약 즉각폐기에 대한 유보의사표명¹¹⁾등으로 조-미 평화조약 체결을 이끌어내려고 힘

9. 김일성 주석의 급서이후 북(조선)에서는 후계자 김정일 비서에 대한 '지도자'라는 공식칭호를 '영도자'라는 공식칭호로 바꾸어 쓰고 있다. '영도자'라는 칭호는 '수령'이라는 칭호를 쓰기 전에 잠정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남(한국)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북녘 동포들의 일상대화에서는 '장군님'이라는 칭호를 쓴다고 한다.
10. 이러한 견해는 송두율 교수의 책 '역사는 끝났는가'(도서출판 당대, 1995)와 이찬행씨의 책 '북한 사회주의의 현실과 전망'(도서출판 두리, 1993)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정대화씨는 '김정일 권력승계와 북한 정치구조의 변화' 역사비평(1990년 가을호) 41쪽에서 북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의 어려움을 경제적 파국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립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가 갑자기 심각하게 약화되리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11. 1992년 7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국의 Pacific Forum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와

쓰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촉구 등 정치군사적 현안에 관련된 당면 통일과업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전제를 놓고 본다면, 통일운동 무용론과 불안감은 반복세력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조국통일운동은 통일운동 무용론과 흡수통합 불가피론의 침습을 배격하고 조국통일의 당위성을 명백하게 정리 선전해야 할 임무를 지닌다.

(3) 남(한국)사회에는 이른바 '통일비용'¹²⁾이 것처럼 많이 든다고 하고, 또한 통일과정에서 사회정치적 불안정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엇때문에 구태여 조국통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회의적인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불안정한 통일보다는 차라리 안정된 분단을 바라면서 현재의 분단체제에 안주하려는 통일포기론이다. 반통일세력은 대중의 통일염원을 증발시키거나 통일의지를 꺾고 그들을 분단체제 안주론, 통일포기론으로 몰아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한국)의 조국통일운동은 분단체제 안주론과 통일포기론을 비판 배격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조국통일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설명해야 하고, 조국통일의 당위론을 전파해야 한다.

민족의 공동이익과 조국통일의 당위성

조국통일의 주체는 '민족'이다. 조국통일은 어느 특정한 지역,계급,계층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또는 그러한 이해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전민족적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유일한 길이고,최고목표다. 한(조선)반도가 어느 특정계급이나 계층, 어느 특정한 지역주민이나 사회집단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칠천만 민족전체의 생활공간인 것처럼,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 '전체'의 장래운명을 결정짓는 민족사적 사건이다. '8.15 해방공간'이 어느 특정한 지역, 계급, 계층이 아니라 일제식민지 압제의 고통과 치욕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에 나섰던 우리 민족 전체에게 사회 역사발전의 비약적 계기가 되었듯이¹³⁾, 21세기의 통일공간도 조국통일을 염

일본의 Asian Affairs Research Council이 공동주최하여 열린, 남(한국), 북(조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표들이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라는 주제로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북(조선)의 리삼로대표(당시 외교부 평화군축 문제 고문, 조-일 수교협상 대표단장, 부차관급 대사직을 지니고 있었을)는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각기 다른 나라들과 맺은 모든 조약은 (통일 뒤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통일 이전부터 남조선에서 얻어온) 다른 나라들의 이익은 (통일 뒤에도) 계속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인용문은 영문자료를 번역한 것이며, 묶음표 안의 귀절들은 번역자가 첨부한 것임) Li Sam Ro, 'The Reunification of Korea and Peace and Security in Asia', Amos A.Jordan (ed.),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1993) 32쪽.

12. 이른바 '통일비용'에 관련한 논의는 주로 재벌기업의 두뇌역할을 맡고 있는 여러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의 논리를 따르면 '파산당한' 북(조선)의 사회주의 체제를 남(한국)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이 논의는 통일문제를 단순히 비용부담문제에 관련한 경제적 손익계산만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 독일의 흡수통합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통일비용이 아니라 '흡수통합비용'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점, 현재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관해서는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13. 민족의 해방과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 시기 일제 식민지 체제안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이나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체제의 수립이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보는 견해, 그리고 민족해방이 아니라 계급혁명을 더 우위에 보

원하고 추구해온 우리 민족 전체에게 사회역사발전의 비약적 계기로 다가올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민족이 '해방공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적 발전이건, 사회주의적 발전이건 간에 민족사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끝장내고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웠던 민족해방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이었듯이, 오늘 분단시대를 끝장내려는 조국통일운동도 전민족적인 운동이다.

분단은 '민족'이라는 사회역사발전의 주체역량을 압살, 파괴하려고 압박해오는 반민족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민족'이 자기를 되찾고, 되살려, 더욱 높은 발전단계로 진전시키는 최고 최상의 도덕적 가치요 이상이다. 어떤 사람은 조국통일과업을 민족자주,민주주의,평화군축,환경,인권,경제성장 같은 가치 과제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면서 조국통일과업도 다른 여러 가치 과제들 가운데 하나일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생각은 평면적이다. 그러한 모든 가치들과 과제들은 조국통일을 이루지 못한 분단 질서아래서는 진정한 실체를 얻을 수 없으며, 오로지 조국통일을 통해서 실현될 수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국통일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조국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이라는 사회역사적 실체¹⁴⁾를 인식할 때, 또한 민족의 공동이익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비로소 그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얻게 된다. '한국형'자본주의를 선호하는 남(한국)의 동포들과 '주체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북(조선)의 동포들은 '민족'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길에서 만나고 대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전민족적인 단결단합을 이룰 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반만년 오랜기간동안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민족공동체가 반세기 동안의 분단 분열에 시달리며 대립 갈등을 빚고 있다. 단일하고 공고한 역사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민족이 분단 분열을 극복하고 민족사의 발전을 성취하는 길은 통일밖에 다른 길은 없다. 분단 분열의 고통과 비극 속에 살아오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최대 최고의 공동이익은 조국통일이다. 조국통일의 당위성은 민족 공동이익 추구의 당위성이다.

통일민족주의와 조국통일의 당위성

모든 사회정치운동은 이념적 기초를 발판으로 삼고 움직인다. 일제 식민지 시대 우리의 민족해방운동을

는 사회주의적 견해가 각각 그러한 범주에 들었다.

14. 흔히 '민족'이라는 사회역사적 실체를 서구의 민족주의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논리적 오류에 빠지곤 한다. 보수적 이론가(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들은 '민족'의 의미를 초기 자본주의 국가형성을 이끌었던 유럽의 역사적 경험에서 찾으려 하고 있으며, 진보적 이론가들은 맑스주의적(또는 스탈린주의에서 정식화된)민족론에서 그 의미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글에서 말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민족주의적 개념으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서구 민족주의는 진보적이건 보수적이건 간에 특정한 사회계급을 중심으로, 또는 특정한 사회계급이 주도하는 계급국가를 중심에 두고 파악한 것으로, 사회 역사적 발전의 실체를 민족이 아니라 계급과 계급국가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론에서는 통일이라는 사회 역사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실체를 계급과 계급국가가 아니라, 민족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 민족주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 이러한 근본차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여러 민족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까닭은 계급국가를 형성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체제에 대항하여 싸운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반만년 동안 한(조선)반도라는 지역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단일한 혈연공동체, 역사 문화 언어공동체로서 형성된 '민족'을 사회 역사발전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다.

보더라도, 다양한 이념적 분화현상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가지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 분화현상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항일 민족주의라는 이념적 기초가 깔려있었다는 사실이다. 돌이켜 보건대, 항일민족주의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차이를 넘어서서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역량을 단결단합시키는 공고한 보루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 남북해의 칠천만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이 다양한 견해와 이념의 차이를 안고 있지만, 분산된 조국통일운동의 역량을 하나로 통일단결시킬 수 있는 조국통일이념의 공통분모 발견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제기하고 있다. 조국통일의 이념적 기초는 어느 특정한 지역,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또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모두 포괄하는 전민족적인 공동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념적 기초를 분단체제주의를 극복하는 통일시대의 이념적 대안 곧 통일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¹⁵⁾

남(한국)에서 조국통일운동의 사상사적 맥락은 일제 식민지 시대 항일 민족주의의 맥락을 분단시대 이후 통일 민족주의로 계승 발전시켰던 세사람 김구 → 장준하 → 문익환으로 이어진다. 냉전질서의 첫 시기였던 1948년 38선을 넘어 남북협상의 길에 나섰으나 끝내 반통일세력의 흉탄에 쓰러진 김구, 냉전 대립의 격동기였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보면서 민주주체의 자주통일을 외쳤으나 끝내 유신독재의 칼날 아래 쓰러진 장준하, 광주민중항쟁 이후 1980년대 남(한국)의 민족민주운동이 이룩한 성과를 냉전질서 해체기의 조국통일운동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1989년 홀연히 평양 방문길에 나섰던 문익환이 통일민족주의의 커다란 줄기를 이었던 분단시대의 걸출한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우리 민족에게 21세기가 통일시대로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통일시대의 사상적 지표는 마땅히 분단체제를 극복한 통일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 분단체제를 합리화하는 반민족적인 민족파벌의 논리를 분단체제주의라고 한다면, 조국통일의 당위성을 밝혀 대중들의 통일의지를 고취하는 민족재생의 논리는 통일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 통일민족주의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북(조선)의 사회주의자와 자주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남(한국)의 민족주의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열린 이념공간이다. 그것은 연방제 통일론의 이념적 기초다. 연방제 통일론을 안받침하고 있는 민족대단결과 공존공영의 대원칙을 따라서 이루어질 조국통일운동의 이념은 통일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 통일민족주의는 통일시대의 한복판에 나부낄 이념적 기치요 조국통일을 앞당길 이념적 기초다.

15. 통일민족주의라는 개념은 강만길 교수가 쓴 개념이다. (그의 논문 '분단 50년을 되돌아보고 통일을 생각한다' 창작과 비평[1995년 복호] 참조할 것) 그는 분단국가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통일민족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분단 '국가'주의라는 개념 대신 분단 '체제'주의라는 개념을 쓰려고 한다. 분단의 국가대립성보다는 분단의 체제대립성을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른 개념정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제2 주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하여

노 정 선

연세대 문리대 교수, 기독교사회윤리학

문제제기

오늘 한반도에서의 해방과 평화정착을 논한다는 것은 몇 가지의 전제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우선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과 한반도가 일본의 강압적 수탈로부터 진정 해방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아니면 그 강압과 수탈과 부도덕한 대우가 8.15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일본의 만행으로부터의 해방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태프트-가쓰라 밀약의 억압구조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가?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해방과 평화정착이란 외세와의 관련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해방이란 남한과 북한(조선)과의 관련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장기수의 해방과 한민족의 해방

1951년 38선에서 체포된 김선명씨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남한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한반도 냉전의 가장 비극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남한에서는 그들을 석방할 수 없는 법적 이유로 간첩 등의 혐의들을 열거하고 있고, 북측에서는 그 분들이 전쟁 중에 포로로서 체포되었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포로석방했을 때 이미 석방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그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남한의 동진호 어부들이 북한에 아직도 '강제로 억류'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마땅히 그들을 남으로 조속히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에서는 이들이 '자의로 북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남아 있는 것이지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남측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며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지도 아니하고 상대방의 설득에 승복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북전략을 수십년간 담당해 온 정부의 관리는 '이북에게는 바늘 한 개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역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대남적

화통일전선전략에 손톱 끝 만한 차이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남한은 일치단결하여 북에 속아서는 안된다는 논리였다. 남한이 이러한 정책을 만약 고수한다고 하면, 김선명씨를 북의 고향으로 보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고착된 입장을 지속시킬 것이다.

오사카 간사이세미나 하우스에서 1995년 3월 28일부터 3일간 북한의 기독교도연맹 강영섭목사(위원장), 류병철(칠골교회 담임목사), 김남혁 국제부원, 황시천 국제부장, 리종로 부원(통역) 다섯 분이 오시고, 남한에서 약 20명, 해외 각국대표 약 35명이 모여서 평화와 통일을 논의했었다. 이곳에서도 비전향 장기수석방요구가 나왔고 이에 맞서서 동진호 선원을 석방하라는 요구가 대립 되었다. 북측 류병철목사와 황시천 목사는 동진호 선원들이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의로 북을 선택해서 잘 생활하고 있으니 남으로 송환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남측은 이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하였다.

어느 편 하나도 사실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틀을, 새로운 파라디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북과 남이 오늘의 굴레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해방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더더구나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북과 남의 민족적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일 것이기에 서투른 예측은 삼가해야 할런지 모른다.

북과 남의 민족전체의 해방과 평화를 함께 이루어 낼 수 있는 우리의 길은 무엇인가? 누가 그곳에 이르는 새로운 틀(파라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여야 하는가? 비전향 장기수로서 세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있는 사람 가운데 44년이라는 최장기간을 감옥에 있다고 알려진 김선명씨들을 분단된지 50년에는 고향으로 보내어 그 불쌍한 인생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자는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김선명에게 있어서 평화와 해방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어떤 모양으로 김선명의 생애에서 실현되어야 하는가? 분단 50년이 한민족에게 기쁨의 해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인가? 분단을 통일로 전환시키는 일을 천천히 하고 더 느리게 해야 하고, 50년 1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로 기획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앞당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북의 적화통일의 앞잡이나 간첩이거나 혹은 철없이 이용당하는 사람들인가? '낭만적으로' 꿈을 꾸는 것은 민족해방에 조금도 도움이 안되는 것인가? 아니면 낭만이 없는 평화와 해방은 두뇌만 있고 몸체가 없는 죽은 해방이 아닌가?

한민족의 해방과 미국의 해방

어느 하나 시원하게 풀리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객관적인 제3의 심판을 구할 수도 없다. 모두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편견없는 중재자를 구할 수도 없다.

결국은 남한과 북한의 당사자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와서 '해결사'를 하면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자신이 1945년 8월 15일에 맥아더 장군의 명령 1호로써 한반도를 분단시켰는데 그들이 이제 와서 중재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우리 민족의 분단에 미친 영향과 피해에 대해서 보상과 배상을 해야 미국이 해방되고 미국이 구원에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결과 해지를 빌미로 해서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오히려 남과 북의 분단을 더욱 실질적으로 영구화시키는 전략으로 나갈 것인가? 남과 북이 해방을 진정으로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미국은 어떠한 변화를 할 것인가? 미국의 변화, 중생없이 해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능력

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앞날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시켜나가야 할 것인가?

맥나마라의 고백과 맥나마라의 해방

최근 미국 전 국방장관으로서 월남전쟁을 주도해 나갈 때, 면도날 같은 명료한 전략수행자로서 알려져 미국인들의 총애를 받아왔고, 감탄의 대상이 되었던 맥나마라가 회고록(In Retrospect: The Tragedy and Lessons and of Vietnam, 1955)¹⁶ 을 출간하였다. 그는 아래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

“케네디, 존슨 행정부의 우리들은 월남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미국의 대월남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미국은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것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실수를 하게 한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마 이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그 해답을 알지 못한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눈사태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미국의 문제들 속에서 중 중 제대로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¹⁷”

제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있던 맥나마라를 제정신으로 돌이켜 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월남에 대한 전략수행이 진행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맥나마라의 운명적인 비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월남에서 300만이 전쟁으로 죽었고, 200만의 부상자가 생겼고 월남전의 여파로 캄푸치아에서는 200만 명이 죽었다. 한국군도 근 5천명에 가까운 전사자와 수많은 상이군인의 희생을 고통스럽게 감수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지옥과 같은 전쟁을 수행했던 미 국방장관 맥나마라는 이제 이 전쟁수행이 미국의 엄청난 실수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 고백을 읽으면서 세계는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죽은 분들, 부상당한 분들, 재산을 잃은 분들,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당하신 분들 앞에서 맥나마라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아세아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역사적인 일을 처리하는데서 비극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은 얼마나 한민족과 한민족의 역사를 알고 분단했는가? 38도선을 분단했던 맥아더 본 스틸 등의 당시 미군들에게 한반도 역사와 민족과 문화에 대한 가장 단순한 시험조차도 아마 낙제 점수(F학점)가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태연히 발표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는 마치 영원한 도덕적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우리 한민족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살고 있어야

16. Robert S. McNamara, In Retrospect: The Tragedy and Lessons of Vietnam, New York, Random House, 1995. "We of the Kennedy and Johnson administrations who participated in the decision on Vietnam acted accordingly to what we thought were the principles and traditions of this nation. We made our decisions in the light of those values. Yet we were wrong, terribly wrong. We owe it to future generations to explain why." (Preface, xvi-xvii)

17. "One reason the Kennedy and Johnson administrations failed to take an orderly, rational approach to the basic questions underlying Vietnam was the staggering variety and complexity of other issues we faced. Simply put, we faced a blizzard of problems, there were only twenty-four hours in a day, and we often did not have time to think straight." *ibid.*, p. xvii.

하는가?

얼마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버클리) 명예교수 스키타피노 교수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미국의 국익론은 미국에 해방을 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구속하고 멸망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심층적인 토론이 미국인들에게 없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통속적으로 수용되어버린 '소위-미국의 이익론'이라는 신화는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재평가, 재정립되어야만 미국이 해방될 수 있고 한반도 역시 해방될 수 있다는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미국이 자신의 국가이익을 좁게 편파적으로 해석한 상태에서 한반도정책을 1800년대 이래 현재까지 진전시켜왔던 것을 총정리하는데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1871년 미국 해병대가 강화도수군을 전멸시키다시피 하고 점령한 후, 15명이 미군최고의 훈장(Medal of Honour)을 수령했다. 1905년에는 일본과 밀약을 맺어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일에 서로 묵인하는 식으로 갈라먹기 약속을 했고, 1945년 미군은 38도선 이남을, 소련군은 그 이북을 점령하고 결국 50년의 분단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해방직후 미군정은 일제시대 앞잡이들을 공무원, 경찰, 군인으로 채용하여 임시군사통치를 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구조를 청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권력과 총칼을 내어주어 친일세력들에게 새로 건국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케 하였다. 태프트-가쓰라 구도를 연장시킨 것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이 빚어낸 비극과 인권유린과 이산가족의 슬픔은 말로 다 형언할 수없는 시점에 와 있다. 1994년 6월 미국은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기습폭격할 모든 준비를 미국 뉴멕시코주 노스알라모스 핵 전술실험실에서 완료했었다. 그 때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한순간의 미군사공격으로 수백 수천만의 사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옥전화에 말려들어 갈 뻔하는 위험수준에 직면했었다.

미국이 걸프전을 수행했을 때 국무장관을 했던 제임스 베이커는 1995년 1월 14일 보도에서 '북한을 걸프전 수순을 밟아서 처리해야 한다.' 고 주장함으로써 한 민족의 생존에 극한적인 위협도 서슴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왜 한반도에서 걸프전을 모델로 생각해야 하는가?

미국은 걸프전으로 약 680억불을 참전국들에서 걷어들여서, 재정의 이익을 얻어냈고, 미,소 냉전과 긴장의 붕괴로 인한 군수업계의 불황으로부터, 다시 군수산업과 관련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한반도에서 다시 대규모의 전쟁을 시작하면, 미국 군수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일본, 유럽제국들은 환호를 올릴 것이다. 누구를 죽여서 누가 돈을 버는가? 제임스 베이커를 해방시키는 과제는 곧 민족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되어있다.

미국인의 병리와 총

미국전략가들 뿐아니라 미국인들의 성품속에 잠재해 있는 갈등을 전쟁이나 전투로 혹은 총기로 해결하려는 호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 "총기발사 유혹을 억제하지 못하는 심리구조"에 큰 원인이 있다.

미국 고등학생들의 11.2%가 총을 가지고 등교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에서 나타났다. 뉴욕시 브로드웨이와 47번가 십자로는 총에 맞아죽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가는 상황전관보도판이 있다. 매 15분마다 한명씩 총에 맞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필자는 들었다.

필자가 1994년 4월 18일 이 전광판을 보았을 때, 1,387명이 그해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보고되고 있었다.

약 삼십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보고 있는 사이에 네명의 사망자 수가 추가되고 있었다. 날만 어두워지면 총격소리가 들리는 것은 별로 신기한 일도 아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총이 있고, 이 총으로 강도나 도둑을 죽이기보다는 가족을 죽이는 경우가 7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등이 생기면 총기발사로 해결하는 미국인들이 이 '총기 질병'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일까?

북한의 핵과 불란서의 핵 도덕성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미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IAEA, NPT, UN 등에서 온갖 압력과 회유로 진통을 겪은 끝에 결국 북한이 경수로를 받기로 하고, 흑연 감속로를 폐쇄하기로 북-미간에 합의가 완료되었다. 전쟁의 위험고비를 겨우 한고비 넘긴 것이다.

1995년 5월 12일 175개국들은 만장일치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이 나자 4일 후 중국은 핵무기를 실험하였고, 불란서는 앞으로 약 10개월 동안에 8개의 핵무기를 태평양 폴리네시아 산호섬 무투로아에서 실험하겠다고 발표하였다.¹⁸⁾ 미국 러시아도 핵실험 재개를 고려하겠다고 따라 나섰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계속 증강시키고 있고, 없는 나라가 개발하려고 하면 희생양으로 몰아부쳐서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기가막힌 논리가 현실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북한을 부도덕한 나라로 몰아서 유엔안보리의 경고와 제재를 논하지만 불란서가 핵실험을 한다고 발표해도, 불란서에 대해서 기습공격으로 핵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스티븐 솔라즈나 윌리엄 페리나 밥돌이나 제임스 베이커는 말하지 않는다. 이중적 잣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핵무기 보유 강자끼리는 서로 돕고, 핵무기 없는 약자들은 희생시키는 체질적 부도덕성과 악한 전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하는 과제가 곧 한민족 해방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한민족에게는 더욱 강한 힘과 의지가 있어야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힘은 총체적인 힘일 것이다. 신앙의 힘, 정신적인 힘,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지식의 힘 등을 자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세울 때 비로소 이 부도덕한 초강대국의 약육강식의 전략들 틈에서 생존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강대국들의 아량과 동정심에 호소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해방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한다면 이것은 철없는 망상이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남이 우리를 악용하고, 희생시키고, 억누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이 있는 독일은 통일을 성공했으나 힘이 약한 한민족이 통일을 추구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힘이 없으면 강대국의 부도덕에 희생되고 만다.

바누누와 이스라엘의 핵

바누누라는 청년은 이스라엘의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를 세계에 폭로하였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150개에서 350개 사이의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고, 계속 더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미국 CIA 및 평화연구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바누누는 1986년 로마에서 납치되어 18년 독방에 감금되는 형을 살고 있다.

18 동아일보, 1995년 6월 23일 9쪽. 호주, 뉴질랜드, 휘지등의 태평양국가들은 방사능피해를 막기위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호주는 불란서군용기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휘지역시 불란서 함정들의 근해사용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일부 외교관계도 단절의사를 밝히고 있다. 불란서는 이미 약 190-230 회의 핵실험을 이 지역에서 했다. 이 실험은 한반도에도 피해를 주어 온 것으로 해석된다.

바누누를 석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바누누는 해방된 인간이요, 그를 구속하는 자들이 해방되지 못한 인간들이다. 이스라엘과 유대계 미국인들 가운데 중요한 정치가들은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부적인 전쟁을 한반도에서 시작해도 좋다고 제안하고 있었던 것을 회고하면 문제는 복잡하고도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는 핵무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국제 현실이다. 이 강대국들을 정신적, 군사적, 경제적 질병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한민족의 참해방을 얻어 내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민초들과 해방

일부 남한의 여론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첫째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의 변화는 오직 주어져 있는 체제내에서, 체제를 공고히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변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대북한 정책이나 민간단체들의 발언들은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현혹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독점해서는 안되며,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시민들은 성숙해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덜 성숙되어 있다.

넷째로, 북한이 더 이상 폐쇄사회로 남아 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대북인식이 새로워져야 한다. 정부는 민간접촉을 늘리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다섯째로, 경수로나 쌀 제공에 있어서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 여론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1995년 7월 8일 KBS심야토론에서의 종합)

순진하고 평범한 민초인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가하는 것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의 공화국 헌법에서 변한 조항들이 있다.

제3조에 맑스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이 없어졌던 것은 벌써 3년 이상 지난 것을 아는가? 종교를 반대할 자유가 있다는 조항도 없어 졌다. 합영법, 외국인 직접 투자법 등 새로 신설된 법들은 외국기업들 맞이들이도록 되어, 나진 선봉지역 특구에서 홍콩식의 국제 무역활동을 도입하게 되어있다. 남한 기업이 북한에서 양복, 가방, 운동화 등을 함께 생산해다가, 남한에도 팔고, 수출도 한다.

북은 변하고 있다. 북한은 변하고 있고, 동시에 변하지 않고 있는 부문도 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서초구청과 삼풍백화점 사장의 결탁이 천여명 사상자를 내는 것을 제대로 읽어보면 참 해방의 교훈이 그곳에 있다. 몇몇 극 소수의 관료체제와 기업가의 결탁이 민족을 얼마든지 유린하고 이완용처럼 외세에게 나라를 팔아 먹을 수도 있고, 민족을 살상하는 극한적인 전쟁위험으로 내 몰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삼풍백화점 붕괴가 예시하고 있다. 썩은 양심으로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정신질환까지 걸리고서, 한 민족의 생명을 판돈으로 걸어 놓고서 전쟁놀음 속으로 끌고 들어가면서도 설마 수천만명이 죽는 한반도 전쟁은 안 일어 나겠지, 전쟁이 발발하는 시기가 임박하면, 용산미군기지로 가서 먼저 탈출할 수 있겠지 하는 용의 주도한 기획을 하고 있는 일부 썩은 관료나 기업이나 정치경제적인 극소수의 특권층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자신의 욕심추구기획을 다시 정리해서, 한민족 전체 민초들의 해방과 구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틀(패러다임)

로 옮겨가지 아니하는 한, 민족의 건강한 해방을 얻어내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이들을 중생시키고 이들의 양심을 청소시키고, 그들을 허무한 욕심으로 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한민족의 해방을 막는 것은 악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법보다도 악법을 만들고, 고치지 아니하면서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해방의 더 큰 장애이다. 악법과 사람을 함께 고쳐야 하고, 남북이 싸우기를 그치고, 한반도를 유린해오고 있는 강대국 사람들을 그들이 걸려있는 욕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야 하는 것이 총체적인 희생양으로 살아 온 한민족의 해방의 첩경이 될 것이다.

결론

평화정착과 해방

오늘의 민족해방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에서 즉, 1945년 8월 15일에 비롯되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했다. 아직도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있다. 그것은 세계지배를 향한 미국과 일본의 공조구도(trilateral north)와 그리고 세계핵무기 강대국들의 공조구도에 의한 한민족 희생양 만들기 전략에 기인한다. 여기에서 참 해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군사적 공동안보 구조를 만들어 역할분담하며, 민족자주의 힘을 구축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기에는 시기가 이르고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며, 커다란 위험도 그 속에 있다. 동북아시아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할 경우 한반도는 일본에 의한 군사적인 하부구조가 될 확률이 90%이상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먼저 함께 한반도 전체를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남북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은 남과 북,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별도로 체결하도록 하며, 그 순서의 선후에는 유연성을 두는 것이 지혜롭게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이를 <2 & 2>방식이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4자 협의나 2+2형식, 2+1형식에는 각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약육강식을 일삼는 강대국들을 회개시키고, 중생하게 하며, 그들이 욕심에서 해방되도록 해야 민족의 해방과 구원이 이루어 지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통일의 원칙과 방도

박 순 경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 상임공동대표

시작하는 말

8.15 해방 50년, 분단 50년이 되는 올해는 50년 동안의 통일운동이 고난의 성과를 거두고 통일원년을 확립해야 하는 해이다. '8.15 50년 민족공동행사'의 '통일대토론회'가 통일원년 확립의 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 우리는 남북에서 제시되어온 통일 원칙들과 방안들을 비판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문제제기하면서 수정, 보충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통일의 원칙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제시했다. 민족대단결은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는 원칙이다. 이 성명은 91년 12월 13일에 채택되고 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계승되었다. 그러므로 이 3대 원칙은 남북의 합일사항이다.

89년 남한 정부가 내놓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 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민족대단결 원칙을 탈락시켰다. 탈락시킨 의도는 아마도 북을 흡수통일하는 가능성을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어쨌든 91년의 남북합의서가 남한 정부의 3대원칙을 받아들였으므로 이 원칙은 남북 사이에 합의된 원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원칙과 함께 민주를 포함한 4대 원칙이 남북 사이에 합의된 원칙이다.

그 동안의 민족민주, 즉 민민 통일운동은 7·4 남북공동성명을 계승 견지해 왔고, 91 합의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해 왔으며, 저 4대 원칙을 대표해 왔다. 그러한 합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원칙은 민민통일운동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재설정되어야 한다.

(1) 자주성의 원칙과 제 문제

자주성은 민족공동체 혹은 민족사회집단의 자율적 주체성을 의미한다. 민족 자주라는 주제는 민족 근현대사에서 형성된 것이니, 즉 항일 독립운동 혹은 민족해방운동의 주제이며, 8.15 해방정국의 통일민족국가와 사회변혁의 주제이며, 8.15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민민통일운동의 주제이다. 북한은 민족독립 혹은 해방을 사회주의 변혁과 종합하고 민족자주를 대변해 왔다. 남한 정권들은 특히 정치, 군사적으로 대미 예측상태에서 민족자주성을 거의 상실해 왔다. 자주성 상실은 미군정, 민족내부의 친미-친일 세력, 이승만 정권 이래 역대 정권들의 반공세력에 의해서 초래된 결과이다.

자주 통일은 대미 예측성을 넘어서서 민족대단결과 민족자결에 의한 통일을 의미한다. 현재의 이른바 한·미 혹은 한·미·일 공조체제가 남북 공조체제로 전환되어야 민족자주성이 회복될 수 있다. 이제 자주성은 남북에 의해서 재확립되어야 한다. 한·미 공조체제는 북흡수 통일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민족 근현대사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온 민족자주성의 명맥을 상실해버릴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자주통일은 바로 수천년의 민족의 명맥을 살려내는 역사적 대과업이다.

(2) 평화의 원칙과 제 문제

평화통일의 원칙은 민족사상 가장 처참한 한국전쟁의 경험을 배경으로 성립된 원칙이다. 53년 북-미 간의 휴전협정 이래 전쟁 발발, 게다가 핵전쟁의 가능성이 조장되어 왔다. 이러한 준전시상태의 근본해결 없이는 민족대단결에 의한 자주·민주·통일은 불가능하다. 준전시상태의 극복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휴전협정 제4조 60항은 협정 조인 후 3개월 이내의 주한 외국인 철수와 평화 장치를 위한 정치회담 개최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미 양국은 조인후 10일만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가조인하고 10월 1일에 정식 조인함으로써 제4조 60항을 배반했다. 작전권은 UN사령부(사실상 미군 사령부)에 귀속되었으니, 한국군의 자주성, 따라서 민족자주성이 상실되어버린 것이며, 전국토가 미군기지화 되어 버린 것이다. 휴전 협정 조인 후 다음 해에 정치회담이 열리기는 했으나 평화정책으로의 정치적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휴전협정 제2조 13항은 한반도에서의 각종 무기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57년부터 원폭운반이 가능한 제트기를 비롯한 무기들을 반입하도록 했으며, 그래서 남북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게 되었다. 북한의 자위 자립경제는 현재 더 이상의 군사력 경쟁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군비증강과 무기구입은 아직도 증대되고 있다.

73년 이래 실시되어온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은 83년 이전까지는 휴전선 유지와 방어전이라는 구실 아래 수행되었으나 83년부터의 팀스피리트 훈련, OPLAN 5027 작전훈련은 평양공격과 북한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즉 전쟁에 있으며, 93년의 NEW OPLAN 5027 훈련은 12만 병력, BIB 폭격기, 스텔스, 패트리엇, 핵장착 폭격기, 전면전 수행을 위한 인디펜던스 항공모함 등이 동원된 세계최대의 핵전쟁 훈련이었다.¹⁹⁾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시마다 농사고 산업이고, 일체를 중단하고 초비상사태에 돌입하곤 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연합사령부²⁰⁾가 이땅에 존재하는 한 전쟁발발의 가능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화정착

19. 강정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정책대안",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을 위하여」, 1994년 국제토론회, 자주평화통일회의, 29f. 쪽 참조.

20. 1975년 UN총회 결의에 의해서 주한 UN군 사령부는 '한미 연합사령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을 위하여 평화협정으로의 휴전협정의 전환이 필수조건이다.

현재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가 있다. 1984년부터 북한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불가침선언을 연계하여 남북미 3자회담을 여러번 제안했다. 그런데 91 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이라는 합의를 성사시켰으므로 불가침선언은 이루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스피리트 훈련과 핵전쟁 시나리오가 한미간에 오락가락 했고 전쟁소동이 몇차례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 민민통일운동은 91 합의서 이행을 촉구해왔다. 91 합의서 이행을 전제한다면, 남북의 불가침은 성립되므로, 이제 북-미간 평화협정에 의해서 이 불가침 원칙의 국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은 북-미간 2자 평화협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이 전쟁당사자이므로 평화협정에 참가해야 하고, 3자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한미공조 아래서 미국이 협상 당사자이기를 거부하고, 남북 2자 협상과 국제보장을 위한 중-미 2자의 참여 즉 2+2의 판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 구도의 추이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좀 더 두고 보아야 하지만, 어쨌든 평화협정 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더구나 2+2에다 일본과 러시아도 한 몫을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협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연합사령부, 주한미군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렵다.

하여간 평화협정 체결과 더불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연합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군축이 이루어져야 평화통일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분단의 이러한 군사적 요인들이 민족 자주성과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3)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제 문제

민민운동 또는 민민통일운동권에서 민족 개념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남한에서의 민족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자가당착적이므로, 우선 민족 개념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민족대단결의 주체인 민족의 의미가 밝혀질 수 있다. 마지막 항목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우선 여기서 간략하게 제시하자면, 민족은 수천년의 역사에서 형성되어온, 지연 혈연 문화 종교와 같은 요인들에 의한 공동운명 혹은 주어진 삶의 여건들을 짊어지는 현재적 사회집단이다. 민족의 자율적인 주체성은 어떠한 체제이든, 어떠한 이념체제이든 이것들을 창출하고 변혁할 수 있는 주체성을 의미하며, 남-북의 상이한 갈등하는 체제와 이념들을 비판하고 변증법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주체성이다. 민족은 서양 근대사에 있어서 부르조아 자본주의적 민족주의 형태로 대두했으나,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 식민지 피억압 민족들의 해방운동에서 입증되었으며, 이들의 해방운동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요인들을 흡수함으로써 민족을 사회주의적 요인들을 흡수한 형태로 변화시켰다. 이들 피억압 민족들은 좌우 사이를 오락가락해왔지만, 어쨌든 좌우를 포괄하는 제3의 요인이 민족대단결의 주축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좌우의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포괄하는 제3의 통일된 민족국가와 사회 창출을 가리키는 원칙이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그러한 제3의 방향을 함축하고 있으나, 남한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방향을 배제하고 따라서 북 흡수통일이라는 근본 전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수정을 필요로 한다.

(4) 민주주의 원칙과 제 문제

북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남한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이 양자를 포괄할 수 있는 주체는 민족이다. 8.15해방 이래 민민통일운동의 주체, 민족민주주의는 바로 통일의 이러한 제3자적 요인이다. 민족적 민주주의는 민족해방의 원리로서 민족근현대사에서 주체화되고 이어져 온 전통을 이룬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제시된 민주 원칙이나 94년 8.15 김영삼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언명된 바 통일원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러한 민족근현대사의 민족민주라는 주체와의 맥을 몰각한, 서양 자본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설명되는 북 흡수통일의 원칙이며, 북한의 변혁사상의 요인들을 포섭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민족적 자본주의' 원칙(이삼성)도 이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 민족적 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서양 근대의 부르조아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와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지만, 후자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자본주의 세계의 변혁으로 열려있는 민족민주의 원리이며 이 변혁을 위한 사회민주주의적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통일의 원칙이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자가당착적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혹은 개혁사회주의를 포섭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참된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세계의 개혁을 위하여 무한히 열려 있어야 한다. 정부당국은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선 남한내 민민통일운동을 포용해야 한다. 민간의 민민통일운동이야말로 민주통일원칙을 대표한다.

2. 통일의 방안과 방법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다. 제1단계는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주로 하는 평화공존이며, 제2단계는 남북연합의 단계인데 두 국가간 연합이 아니라 특수관계의 연합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의 연합이라면 연방제에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연방제를 배제한다. 연합은 남북정상회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관장하는 남북각료회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통일헌법 초안을 위주로 하는 남북평의회를 두고 이러한 제반교류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단계는 총선에 의하여 단일한 통일민주공화국과 양원제 국회를 실현한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통일방법으로 어느 천년에 단일 통일국가를 실현하겠는가? 또 이러한 통일방안과 방법은 북 흡수통일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연방제를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방법은 통일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제시하지 않으나, 전단계에 해당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시기에 따라 약간씩 변화하면서도 일관되게 제안되어왔다. 북한의 접근방법은 원칙적 일괄타결 방식으로 근본적인 정치, 군사문제 해결을 우선하면서 통일에 기능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제시한다. 북한은 현재 국보법 철폐, 장기수 송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 남북의 군축 등 통일에 저해되는 정치, 군사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교류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은 그러한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해 왔다. 연방제는 연합과는 달리 단일국호를 가지는 하나의 연방국아래서 공존하는 두 지역정부들이 존립하는 형식이다. 과연 이러한 연방제가 성립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기는 하지만, 자주, 민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방안은 연방제 이외의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연합과 연방은 상호 종합될 수 있다. 사실상 연방국 아래서의 두 지역정부들의 존재는 연합을 포괄하는 연방제이다.

남북의 공식 통일방안들 이외에 문익환, 김대중, 김낙중의 통일방안들은 연합의 단계와 연방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문익환은 연방제 내에서의 3단계론, 즉 남북의 독자적 군사외교권→군사외교권 통합→연방제의

도단위 실현이라는 느슨한 연합단계를 흡수하는 연방제를 제시했다. 김대중은 평화공존→연합→공화국 연방제라는 3단계론을 주장하며, 김낙중은 제4의 1국가 1체제 완전통일의 단계를 부가했다. 이러한 단계론적 연방제의 문제는 과연 제1, 2단계들이 연방제 통일으로 이행하겠는가, 분단을 영속화시키지 않겠는가, 어느 천년에 연방제 통일에 이르겠는가 하는 것이다. 군사 외교권을 두 지역정부가 독자적으로 우선 소유한다는 문익환의 느슨한 연방제단계론은 보다 더 연방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 같으나, 군사 외교권이 없는 연방국이 과연 연방국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두 지역 정부들이 단번에 군사 외교권을 연방국에 넘긴다는 것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군사 외교권이 연방국과 두 지역정부들에 배분되는 방법도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사, 외교권은 두 지역정부들에 주어지되 연방국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21)

이제 우리는 이상의 통일방안들을 수정하고, 91. 남북합의서를 고려하면서 다소 비판적으로 그러나 종합적으로 통일방안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1) 남한 정부의 연합단계와 북의 연방제는 사실상 상호 접근해 있다. 남북 연합이 두 국가간 연합이 아니라, 특수관계라는 것은 연방에 상당히 접근한다. 또 '한민족공동체'라는 통일 기초는 연방제와 종합가능하

21. 아래 표를 참조하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
원 칙	자주 · 평화 · 민주	자주 · 평화 · 민족대단결 · 민주
남의 제1단계	기능주의 접근 방법: 교류협력 · 평화 공존	원칙론적 접근 방법: 남의 국보법 철폐와 장기수 송환, 북-미 평화협정,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남북의 군축과 불가침 등 정치 군사문제 타결과 더불어 대화와 교류협력 확대
	'91 남북 기본합의서 : 남의 제 1단계와 북의 정치군사적 요구조건들을 포괄할 수 있음	
남의 제2단계	남북 연합(특수 관계의 연합):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류 관장 남북평의회 · 국회의원으로 구성, 통일헌법 초안 작성, 공동사무처 설치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 최고 민족 연방회의- 남, 북, 해외 연방 상설위원회 설치, 민족연합군 설치
남의 제3단계	단방 통일 민주 공화국 : 총선에 의하여	불확정적으로 열려 있음
문 익 환 김 대 중 김 낙 중	연방제 3단계 : 군사외교적 독립 -> 통합 -> 도단위자치제 공화국연방제 3단계 : 평화공존 · 남북연합 -> 연방제 -> 완전통일 4단계 : 평화공존 -> 국가연합 -> 연방제 -> 1국가 1체제	

다. 한민족공동체라면, 이것은 마땅히 하나의 국호, 두 체제의 공존공영을 포괄하는 하나의 연방국과 일치되어야 한다. 93년 5월 태평양 경제협의회에서의 연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중 연방제를 고려하는 남북 연합을 실현하겠다고 언명했다. 사실 연방제는 예비적 전단계 없이 곧장 설정되기에는 남북 사이의 골이 너무 깊다. 그런데 91. 남북 합의서가 되살아난다면, 필요한 전단계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91 합의서는 사실상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제1, 2단계 즉 평화공존과 연합을 포괄하고 있다. 북-미간 2자이든 남북-미 3자이든, 평화협정 체결의 기반이 91 합의서 제1장 5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남북의 불가침과 군축을 비롯한 정치군사 문제 해결책은 제2장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해결을 위한 협상과 더불어 연합을 포괄하는 연방제의 종합이라는 동시설정이 필요하다.

통일의 제1차적 목표로서의 연방제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만 예비적 전단계의 정치군사 문제협상과 경협이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 통일의 제1차적 목표달성이 용이해진다. 또 이러한 목표설정이 남북의 신뢰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처럼 연합단계가 연방제와 무관하게 설정된다면, 남북의 갈등 충돌을 야기시키는 평행선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한미일 공조체제는 북의 붕괴, 민족예속, 민족과탄을 초래하거나 남북은 영구분단으로 고정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 사회문화, 종교, 여성교류는 통일의 그러한 제1차적 목표설정과 정치군사적 평화협상의 진전에 따라 후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각종 교류협력이 혼란, 통일역기능, 전쟁소동, 민족자주성 상실에 휘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2) 북한의 최고 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 설정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연합단계의 구성요소들과 동시에 종합될 수 있다. 즉 연합단계의 구성요소들, 남북 정상회의, 각료회의, 평의회는 그대로 최고 민족연방회의에 포괄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 1연방국이 세워진다고 해도 두 지역정부가 군사 외교권을 곧장 연방이라는 제3자에게 송두리채 이양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의와 각료회의가 중앙연방국의 최고 민족 연방회의를 관장한다면 중앙연방국의 군사 외교권 통제가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실제 군사 외교권이 두 지역정부에서 행사되면서 연방국 통제 아래 놓여야 할 것이며, 민족 연합군 조직과 더불어 군사 외교권의 통합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한 당국의 통일방안과 방법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최고 민족 연방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3자적 자리가 민민통일권을 비롯한 민간학술 및 사회단체들, 여성단체들, 교육단체들, 노동자농민단체들, 북한의 인민단체들과 해외의 통일단체들을 포괄하는, 말하자면 민족민주연합(약칭 민민련, 이것은 재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아직은 공식화된 표현이라기보다 가설적 표현이다)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연방상설위원회도 남북의 정상, 각료, 평의원 이외에 민민련 대표 즉 3자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최고 민족 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가 그렇게 3자들로 구성될 때에 민족민주연방국의 틀이 성립된다. 민

이 표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1989, 국토 통일원); 정대화, 「남북의 통일방안 비교」, 「동향과 전망」, 1990, 가을호 에 제시된 통일방안 비교표 ; 강정구, 「민족과 통일, 그리고 통일운동」 「1995년 통일정국의 진단과 과제」 (주최: 문익환 목사님 1주기 추도위원회, 주관: 자주 평화 통일 민족회의); 「해방 50년: 분단의 역사, 통일의 역사」, 해방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한국 역사 연구회 주최, 57쪽의 통일방안 비교표를 참조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집중한 표이다.

민련은 민족적 민주주의의 원칙이요 척도이다.²²⁾ 북한이 제시한 최고민족 연방회의의 연석회의 방식은 어느 정도 그러한 민민련의 자리를 열어주고 있으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91 합의서는 그러한 자리를 허용하는 여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3) 연방국 다음의 1국가 1체제라는 완전통일의 단계는 북의 연방제방안에서는 불확정적으로 열려 있으나 침묵되어 있고, 남한 당국은 그것이 불완전 통일이라고 해서 제3단계로서 단방 통일민주공화국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국가는 북 흡수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북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민민통일 운동권은 연방제 다음의 1국가 1체제가 어떤 정치사회체제이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답하고 구상할 겨를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내포된 좌우의 대결을 초월하여 좌우를 포괄하는 통일의 제3의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연방제도 제3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가리킨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다룰 것이지만, 우선 말해둘 것은 제3의 길만이 북흡수통일을 방지하는 길이라는 점이다. 소련과 동유럽의 해체, 서독의 흡수 통일, 걸프전에서의 미국의 승리와 북한 폭격시나리오, 북-미 핵협상에서의 한미 혹은 한미일 공조체제와 미 대북강경파의 북폭격설 제재론, 남한 당국의 오락가락 외교와 대북정책, 북-미 핵협상과정에서의 한미공조체제에 의한 남한 당국의 대북관계 주도권 장악시도와 자주성 상실의 외교 —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자주·평화·민주·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여지없이 훼손시켰으나, 이들 원칙은 되살려져야 한다.²³⁾

3. 통일의 길, 제3의 길

자주, 평화, 민주, 민족대단결의 4대 원칙과 연방제 통일방안에 함축되어있는 제3의 길은 민족 근현대사의 민족민주라는 주제에 내포되어 있다. 민족민주는 근현대 항일민족운동에 뿌리박고 있으며 8.15해방정국에서의 통일 민족민주국가와 사회건설을 위한 주제였으며, 8.15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운동의 주제로서 이어져온 전통이다. 이러한 민족민주를 서양 근대의 민족국가와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의 영향아래서 촉발되었으나 이 테두리내에서 다 설명될 수 없는, 수천년 역사에서 형성된 상실의 위기에서 발단했다. 민족은 항일운동의 주체를 의미하여 민주는 이 주체의 동력이다. 민족구성원들 혹은 민중이 민족사회의 해방과 존속을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민족민주가 뿌리내려졌고, 8.15 이래의 통일운동에서 한결같이 주제화 되어왔다.

22. 본래 나는 88년 4월 25-28일 N.C.C 여성위가 주최한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대회”에서의 강연에서 남, 북, 해외 동포로 구성되는 “민족회의”를 연방국의 제3자로서 제시했다. 90년 범민족대회 추진 중 이것의 상설화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나는 “민족회의”라는 명칭을 제안했는데(「통일 신학의 여성」, 한울, 291이하 참조) 북과 해외의 평양 범민족대회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구상해서 전달했던 것이다. 범대회 상설화문제는 남측에서 제안되었으나 남북해외가 만나지 못한 까닭에 ‘범민족연합’이라는 명칭이 남측에서도 그대로 결정된 것이다.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가 ‘민족회의’라는 명칭을 채택했고, 이 명칭이 최고 민족연방회의라는 명칭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는 여기서 민족회의 보다 폭넓은 ‘민족민주연합’이라는 명칭을 가설적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23. 표2, 종합통일방안

민간의 민족운동이 바로 민주주의의 주체적 동력이다.

1920년 전후부터 항일민족운동이 세계의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족민주 개념이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족사회해방 혹은 변혁의 주체와 동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민족민주는 우편향하기도 하고 좌편향하기도 하면서 좌우 연합전선들을 형성하게 되었다. 제3의 길은 바로 여기서 발단했다. 민족이 좌우 이상의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합전선들이 시도될수 있었으며, 8.15해방정국에서의 민족민주국가 수립운동, 좌우 합작운동,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통일운동에서 제3자적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기독교와 민족이라는 두 축을 맴돌면서 제3의 길, 통일의 길을 궁리해 왔다. 하나님·예수그리스도·성령과 같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적 주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혹은 맑스주의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궁극적인 제3자의 위치에 선다. 이러한 근거에서 20세기 신학의 대 창시자 바르트(Karl BARTH)는 「동과 서 사이에 있는 교회」(Die Kirche Zwischen Ost und West)라는 글에서 제3의 길을 생각하면서 자본주의 서방과 결탁한 기독교를 비판했다. 프랑스의 공산당의 이론가였던 가로디(Roger Garaudy)도 60년대에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립을 넘어서는 “제3의 사회”를 제창했다. 60년대 독일어권에서 추진된 ‘크리스찬-맑스주의자의 대화’에 참여한 동유럽권 신학자들과 맑스주의자들이 역시 바르트나 가로디와 유사한 제3의 길을 지향했다. 타종교들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의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

다. 제3의 차원이란 모호하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제3의 길의 모색은 기독교 대 공산주의라는 상호 대립을 넘어서서 상호비판, 상호재해석, 상호접근을 통한 제3의 새로운 사회창출의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의 일환인 7월14일의 제2차 국제대회에서 강연한 랜스버그(Martin Hart-Landsberg)에 의하면 통독이전 동독에서 개혁사회주의 운동으로서의 제3의 통일의 길이 모색되었으나 흡수통일을 의도한 서독의 대동독 정치경제적 압박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세계가 자본주의 세계에로의 흡수되어 가는 상황에서 제3의 길이란 현재 유럽의 사민주의 이상 모색되기 어려운 것 같다고 권두영 박사는 제3의 길, 통일의 길로서 “민주 사회주의적 방향”을 지향했다.

통일의 길, 제3의 길은 남북의 대화와 협동에서 개척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3의 통일된 민족민주국가와 사회는 물론 상대적이고 새로운 미래에로 진전해야 할 한 단계이다. 근 한세기 동안 단련되어온 민족민중의 민주역량은 제3의 통일된 민족국가와 사회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p>통일준비작업 정치군사협상과 교류협력</p>	<p>91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보충; 1.국보법 철폐,장기수 송환,남북미 3자 평화협정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남북의 군축, 비핵지대화 등 정치군사문제 해결 2.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여성의 점진적 교류협력 3.민족경제와 복지사회 실현과정 4.연합·연방제의 종합 동시설정예로의 이행준비 5.남-북-민민련 3자 준비위원회 구성</p>
<p>제 1 단계 연합·연방제</p>	<p>민족민주 연방공화국(가설); 1.최고민족연방회의-남북정상회의,남북각료회의,남북평의회와 민민련,3자 의결기구,연방상설위원회 설치 2.연방국대표-남북정상 3.연방국 양원제 국회-남북 평의회와 민민련 대표 4.연방군 창설,군사의교권 통제배분 점진적 통합 5.민중 평등권을 보장하는 민족경제와 복지사회건설 6.각종교류와 자유왕래 7.1국가 1체제예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과 준비위 구성</p>
<p>제 2 단계 1국가 1체제</p>	<p>제 3의 민족민주공화국-단방; 1.의회정치와 노동당 일당정치의 타협과 통합 2.노동당을 비롯한 사회주의정당을 포용하는 다당제 3.양원제 국회-최고민족회의 포함 4.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병합조절 소유제 재구성 5.동북아의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 6.세계평등을 위한 세계화 지구화추세의 방향 조절</p>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의 문제

박 원 순 (변호사,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부집행위원장)

1. 통일로 가는 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통합, 화해와 화합의 정책과 노력은 법률과 조약 등의 형식으로 결실되게 마련이다. 법률과 조약은 통일정책과 노력을 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통일에 관한 추상적이고 총론적인 논의를 법률과 조약 형식으로 담아보는 시도를 기울여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다.

2.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먼저 남북이 많은 조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호간의 법률을 조정, 폐지, 제정하여야 한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이 체결되었으나 이에 따른 남북의 법률체제 정비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후자의 문면과 취지에 따르면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노력은 없이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편의적이고 '땀질적'인 법률만이 탄생하였다. 이 법은 단순히 남북교류와 남북교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정되었을 뿐 진정한 남북화해를 위한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이 엄존하여 두가지 법률이 너무도 큰 모순관계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헌법의 영토조항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어서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는 남북의 법률적 진전이 한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3. 향린교회에서 이미 시도하였던 통일헌법초안 제정작업은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후의 국가와 사회의 모습을 보다 실감나게 고민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접촉과 화해의 결실로 맺어지거나 통일 이후의 각 방면에서의 상이한 체제의 통합을 위한 법률의 초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은 정부에서만, 그리고 법률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한 초안의 작성작업이 통일을 향한 구체적 열망의 표현이자 촉구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4. 남북의 화해는 고위 당국자의 악수와 사진촬영, 식사와 요란한 만찬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해묵은 감정의 골을 메우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상호

간의 간첩 또는 억류자의 석방 또는 교환이다. 과거 불행한 분단의 역사에서 남북의 상호 체제경쟁과 체제방어를 위해 상호 간첩을 보내고 억류자를 양산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따지고 보면 이들조차 분단의 희생양이다. 이들은 남북대결의 가장 일선에서 사로잡힌 '포로'의 신분들이다. 이들의 석방과 교환은 인도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의 그러한 첨예한 대립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특히 가장 엄혹한 냉전이 존재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미국과 소련, 서독과 동독 사이에 상호 간첩 교환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우리의 남북화해가 무르익어가는 과정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5. 이 모든 법률과 제도를 민족화해의 취지와 맞추어 조정하고 남북의 체제경쟁과 대립에서 빚어진 불행한 역사의 잔재를 일소하는 과정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이다. 뒤에 비수를 간직하고 앞으로 악수하는 일은 결국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상호주의'는 원칙적으로 보면 당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는 그냥 있는데 우리만 다 벗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상호주의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서로 '상호주의'만 고집하면 영원히 다가설 수 없다. 어느 쪽에서건 먼저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양보는 보다 더 힘있는 자, 여유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문익환 목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남은 북을, 북은 남을 고무, 찬양할 수록 통일의 길을 빨라진다"고 말한 것처럼 서로가 양보하고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상호간에 진실한 원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바로 통일이라는 과실을 위해서.

한민족의 고유이념을 통일이념으로

박종구 (우리찾기 모임)

1. 망국·분단의 근본원인은 민족고유이념 상실에서부터

우리는 분단 50년간 입으로는 통일이라는 말을 한시도 빼지 않고 외쳐왔다.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남한의 어떤 정권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정권은 없었으며 통일 추진을 위한 온갖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남·북한 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현혹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자력에 의한 통일방안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민족의 분단은 강대국에 의한 약육강식 논리의 결과였으며 아울러 우리민족 내부의 분열과 정치 집단들의 당리당략적인 태도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수천년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여 온 위대한 우리민족은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고귀한 민족이념의 상실로 인하여 민족구성원들의 공동목적을 잃고 있으며 개인은 개인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 사상별, 종교별, 계층별로 민족내부의 약육강식전을 전개하여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로 망국과 일제치하에서부터 민족분단, 동족상잔으로 이어지는 민족 분열의 근본원인이 공통의 민족이념상실에 있으며, 분단 후 지금까지 남과 북은 상호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다.

2. 통일방안 모색은 민족이념 상실의 치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구상하고 모색하기에 앞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인 민족이념의 상실 치유라는 점에 우리의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1) 한민족의 이념

우리 민족은 세계일가주의, 진리주의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우리민족의 이념 즉, 우리의 진리와 사상이 있거나 했었으며, 또 있었다면 무엇이 우리 민족의 이념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외세(당나라)를 끌어들이기 미명의 3국통일로부터 시작하여 고려의 숭불정책, 이조의 유교에 입각한 사대주의에 의해 우리민족은 수천년간 "널리 모두에게 이로우며 도움을 주는 인간"(홍익인간)을 추구하고 "진리·이치로 되어가는 세상구현"을 목적으로 했던 위대한 민족고유이념을 소유한 훌륭한 민족임을 잊어 버렸던 것이다.

2) 한민족임에 대한 자부심

우리 민족은 타 민족이 지켜내지 못한 위대한 인간애와 진리의 세계를 지켜왔던 훌륭한 민족으로 세계인을 하나의 동포로(세계일가주의) 생각하고 진리와 이치에 입각한 세계구현을 목표로 세계인을 교화하고 지도해온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림문자(한문)를 소유하였으며(한문은 중국의 글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문자임) 뜻과 소리와 가치관까지를 함축하여 만들어진 한글, 즉 ●(공간), □(물질), △(시간)의 함수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과학적인 글(말씀:말을 쓴 문자)을 소유한 지구상의 타민족과는 구분이 되는 세계유일의 문화민족, 천손민족(과학성, 합리성, 가치성을 추구)임을 자각하여 21세기를 맞는 우리 한민족의 세계사적, 역사적 사명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상통일을 통한 한 뿌리 확인이 최우선 과제

외래 사조에 의해 분열된 남·북한 민족의 통일구심점으로 우리의 뿌리사상 즉, 단군사상이라 일컫는 민족 공동이념을 민족 모두가 함께 추구하여야 할 이념으로 하여 사상통일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념 분열에 의한 분단의 해결을 근본적인 이념통일이라는 원인 치유 없이 물리적이고 외세의존식 통일방안만을 제시하는 것은 지엽적이고 대중적인 일시 처방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4. 통일이념으로 한민족 뿌리사상 채택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통일을 논함에 있어 분열된 사상의 통일방안을 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뿌리, 한 핏줄, 한 형제, 한겨레이다. 한겨레란 한(一,天,太,宇宙,共,全,公) + (同:같은, 예:물결, 숨결, 한결같은) + (心:마음, 胎:태)의 합성어로서 하늘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변함없는 한마음, 한피의 민족임을 뜻하는 말이다.

이 위대하고 거룩한 지혜와 이념을 놔두고 우리가 왜 타민족의 저급한 가치관과 이념(사상과 학문)에 의존하여 형제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가?

외세(강대국, 외래사조, 외래학문, 외래종교까지도)에 빠져 민족을 배반하고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앞장서 왔던 집단이나 개인은 이제 반성하고 한겨레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이제 조상(단군)의 위대한 뜻앞에 모든 사사로움을 뒤로하고 한 핏줄, 한형제로의 본분으로 한겨레의 큰 뜻을 이루는 대열에 돌아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정' 접근방안의 개념적 문제²⁴⁾

이삼성 (한림대 교수, 정치외교학과)

1. 통일방안 논의의 의미

<전략>

통일경로에 관한 상이한 논의들은 일견 무의미한 차이들 같지만 이와 같이 통일과정에 관한 접근의 근본적 차이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등이 제시한 통일방안들을 단순히 통일경로의 설정으로 보는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것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전반적 접근시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방안논의는 통일과정에 관한 논의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기도 한 것이다.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경로설정의 문제가 아닌 중요성을 내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남한정부나 정치권에서 논의해온 통일방안논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들이 내포한 개념적 혼란과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지적함으로써 그 논의들이 통일과정에 관한 남과 북한 간의 합의를 수렴하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개념들로 수정될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적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정부의 민족통일방안, 김대중의 3단계통일방안을 북한의 통일과정에 관한 시각과 비교하면서 이들이 안고 있는 논리적 모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내포한 개념들을 추출해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한 평화적 통일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담은 개념들로 통일과정접근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정치공동체 형성단계의 문제 : 연합과 연방의 문제

통일경로에 남북연합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남한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북한정부의 최근 태도, 김대

24. 이 글은 1995년 7월 14일 8.15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 주최의 '95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발표되었던 이삼성 교수의 발표문 '한반도 통일문제 접근의 주요문제' 중 통일방안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한 글입니다.

중이사장의 3단계 통일방안 등에 다같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필자도, 통일경로로서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두가지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화해·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남북간 공동체형성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점진적, 평화적 남북통합의 제도적 표현으로서 국가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연방제를 통일경로의 하나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연방제란 것은 통일국가의 전단계(前段階)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국가의 한 형태이다. 미 합중국을 주지하다시피 연방제 국가이다. 그러나 미합중국을 통일국가로 아직 이루지 못한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즉, 연방제란 통일경로의 중간단계의 하나가 아니라 남북의 공동의사나 역사적 조건들에 의하여 선택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통일국가의 한 모형인 것이다. 만일 북한의 민주연방제는 통일국가의 모형으로서 연방제 국가를 설정한것이라면 북한은 장차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로서 일원적 국가(一元的 國家: unitary state)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것이 국가연합의 단계에서 바로 일원적 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상정한 것이라면 한국정부는 통일국가의 모형으로서 연방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인 통일국가 상에 대한 남북정부의 견해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며, 반드시 통일경로의 단계들에 대한 견해차이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차이는 남북 정부 지도자들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북 국민들의 결정에 의하여 해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연합 단계정도로 남북간의 외교적 군사적 공조체제가 일정하게 가능해지고 정치적 이념에 관한 상호이해가 확산되며, 경제생활공동체가 형성되어 경제교류·협력 뿐 아니라 남북간 상당수준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확보될 경우, 그 상황에 가서 통일국가의 모형으로서 연방제를 택할 것인지 또는 일원적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남북 국민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연방제를 넣느냐 아니냐는 그 연합 단계에서 한국 국민전체가 통일국가 모형으로서 선택할 문제이지 우리가 통일경로에서 중간단계의 하나로 넣을 문제가 아닌 것이다.

3. 정치공동체형성의 조건 : 남한의 화해·협력 개념과 북한 시각의 이해

화해·협력을 연합단계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일견 매우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논리적 함정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화해·협력이라는 개념의 문제점은 적어도 두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그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그만큼 막연한 개념이다. 화해협력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정의하기에 따라서 남북간 공동체의 초기단계가 될 수도 있고 연방제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정서적·제도적 동질성이 확보된 단계의 공동체 형성단계일수도 있다. 즉 화해·협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이다. 북한의 경우 이 화해·협력에 군축, 외국군사력문제 해결 등의 정치군사적 내용들을 담아 주장할수도 있고 남한측의 경우 불특정수준의 인적교류, 경제교류 등을 주내용으로 제한할수도 있다. 즉 남북한이 서로 합의한 수준과 방식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은 화해·협력 단계 설정은 그것 자체가 통일방안 또는 통일경로 단계설정에 모호성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개념을 통일방안의 한 단계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실질적 화해·협력을 본격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명확히 제시하는 개념들이 화해·협력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남북연합의

앞단계, 즉 그것의 전제인 동시에 그 연합의 형성을 가능케 할 조건들을 나타내는 내용들로 대체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화해·협력이라는 것은 연합형성의 실질적인 전제조건이요 기본명제이기 때문에 화해·협력단계를 통일경로단계에 넣어야 되느냐 마느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연합 이전 단계에서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들로서의 실질적인 화해·협력을 제도화·본격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방안들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개념들이 연합의 전 단계로서 개념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연합이든, 연방이든, 이들 개념은 구체적인 제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개념들은 남북간 화해·협력이 진전되고 정치적·경제적 공동체 형성이 진전되는 단계들을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들은 남북간에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대립해소와 협력 또는 공조체제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제도적 형태들이다.

느슨한 통합상태를 나타내는 국가연합이든 통합성이 높은 연방이든 그런 것들이 실질적 의미를 지니려면,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정치적 동질의식, 경제적 수준과 제도의 일정한 동질화, 외교적 대결에서 공조체제로의 전환, 선언적 의미의 불가침조치를 넘어선 상당한 수준의 군사긴장완화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공조가능성의 차원으로까지 진전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국가연합의 단계에 도달하면 그로부터 연방제든 일원적 국가로든, 총체적인 정치적 통합은 가속화되게 되어 있다.

그렇수록 우리의 통일방안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할 부분은 국가연합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에 있어서의 화해·협력의 체계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향성을 표상하는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화해·협력이라는 개념은 것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당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의미에서 비판적으로 성찰될 필요가 있다. 화해·협력이라는 개념이 지닌 보편적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그것이 가진 정치적 성격에 있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한 통일방안논의에서 이 점이 흔히 간과되어온 것은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불균등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안은 남북한의 통일국가상에 관한 견해를 말한 것이지 통일경로 또는 통일방안 자체는 아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사실은 그들의 군축제안, 평화협정체제 구상 등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북한정부가 통일국가의 전단계로 남북연합형식의 느슨한 국가통합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통일국가의 모습 그 자체로는 연방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그 전제들로서 북한의 대외 경제·외교관계 정상화, 즉 교차승인을 전제한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문제와 군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남한정부는 통일국가의 한 전단계(前段階)로서 국가연합을, 그리고 통일국가 그 자체의 궁극적 형태로는 일원적 국가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것을 가능케 할 전제조건들에 대해서는 인적·물적교류(와 함께 북한측의 거의 일방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론이 "본래 장기적인 교류, 평화공존의 단계를 건너뛰는 민족성원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방안이며, 최근에는 북한은 이를 보완해 "연방제로 가기 위한 평화 정착단계에도 관심을 보여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통일방안의 성격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북한의 통일문제 접근이 내포하고 있는 위와 같은 이중구조적 차원을 간과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를 우리가 통일국가의 모형으로 수용할 것이냐를 떠나서 북한의 연방제론은 궁극적 통일국가상에 대한 그들의 논의였으며, 그 전단계로서의 통일과정에 대한 그들의 논의는 군축, 핵무기철수론, 주한미군론, 남북민족간 정치협상 등의 군사정치적 제안들에서 찾아진다. 즉, 북한의 통일방안론은 그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정치협상안과 군축안등 정치군사적 제안들을 한편으로 하고 통일국가상으로서의 연방제안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이중구조'의 성격을 띠어 왔던 것이다. 반면에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은 인적·물적 교류를 주내용으로 하는 의미의 주로 비군사적·비정치적 내용의 화해협력이라는 개념을 맨 앞머리에 놓으면서 통일경로를 제시하고 또 거기에 궁극적으로 총선거를 통한 일원적 국가를 염두에 둔 통일국가상을 한 패키지로 묶어서 제시해 왔던 것이다.

남북간의 통일방안 차이에 관한 논의가 만일 이러한 점을 떠나서 추상적으로 화해·협력, 연합, 연방, 통일국가 등의 개념으로 대표되고 압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남북간 통일방안 대결의 핵심을 놓칠뿐만 아니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남한정부가 연합의 전단계로 설정한 화해·협력은 북한이 연합과 같은 통일과정진전의 전제조건으로 언제나 제기해온 군축과 같은 군사적 내용은 뺀 개념이라는 점은 이런 의미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를 포함해 많은 분석가들이 북한의 통일방안논의와 남한의 통일방안논의에 대한 평면적 비교를 해 왔다. 우리들 역시 그러한 논리적 함정에 빠짐으로써 종종 본의아니게 북한 통일방안의 '비현실성'을 부각시키거나, 남북간 통일방안의 진정한 본질적 차이를 은폐하고 마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이 남북간 통일방안에 대한 형식논리적 비평이 초래해온 중요한 문제점이며, 앞으로의 통일방안 논의에서는 바로 이러한 평면성을 극복하고 남북간의 실질적 "통일접근방안"의 차이점을 주목하고 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내용을 담아 남북 서로의 구체적 공명을 이끌어낼 "통일접근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바로 남북통일접근방안의 차이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하며 통일경로 또는 통일단계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이 점에 관한 남북간 차이의 조정·타협을 모색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상해 통일방안 단계에 삽입해야 한다고 본다.

4. 대안적 통일과정의 개념

이러한 취지를 근거로 필자는 3단계 정도의 통일접근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단계는 남북간 "평화·협력"의 체제를 가능케 할 조치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대로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가운데, 사실상 북한의 주안점인 평화체제·군축체제 건설을 뒷면으로 철수시키기 위해 "화해협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을 수 있고 또 그간의 통일정책은 그러한 인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것처럼 한국정부의 화해협력이라는 개념이 그로 인해 남북간 통일접근방안의 차이점을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시정하고 북한의 강조점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평화·협력단계"라는 개념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첫번째의 평화·협력단계는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이에 바탕한 한반도 평화체제건설, 인적·물적 교류의 초기단계,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의 초기 단계가 우선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한다. 이 단계는 또한 더 나아가 실질적 군축의 시작, 인적·물적 교류의 심화, 남북간 경제협력체제의 본격화까지도 포괄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상정한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평화·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두번째 단계인 남북연합의 건설은 가능해진다. 이 국가연합의 단계는 단순한 군사적 긴장의 완화차원을 넘어서 일정한 수준의 군축을 포함한 남북간의 폭넓고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대화와 협상이 진행된 것을 전제로 한다. 연합이라는 것을 남북간 협상기구와 제도의 형식적 설치가 아닌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면에서의 남북간에 상당한 실질적 공조와 협력체제의 가동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연합의 성립은 위에서 지적인 평화·협력단계의 진전위에서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군축의 최종적 내용들은 평화·협력단계가 아닌 이 국가연합의 단계에서 추진될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이 국가연합단계로의 진입의 조건으로서 평화·협력단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면, 이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또는 다자간 안보질서의 형성은 바로 이 남북간 국가연합체제 하에서 남북간의 일정한 외교공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두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셋째 단계인 통일국가에 이르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이 통일국가가 연방제가 되느냐 일원적 국가가 되느냐는 국가연합단계에서 남북이 같이 구상할 문제이며 결국에는 이미 지적한대로 남북 주민들의 총의라는 역사적 과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만일 연합단계에서 남북간 경제력, 사회체제 등에서 남한이 월등한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면, 북한주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일원적 국가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한의 사회경제문화체제에 대한 양가적 정서와 경계심이 강하다면 북한주민들은 연방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부터 통일국가상으로 연방제를 수용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궁극적 통일국가상에 대한 추상적 논의수준 나뉘므로 의의는 없지 않겠으나 통일경로상 지금 결정해 단계로 삼입할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궁극적 통일국가형태에 대한 남북간, 또는 남한 내부에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으로 그치고 말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그대신 우리는 남북연합단계에서 통일국가의 형태를 연방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남북간의 대화를 통한 합의로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대중의 3단계 방안과 달리 연합단계와 통일국가의 중간에 연방제 단계를 삽입하지 않은 점에서는 정부의 통일방안과 필자의 그것이 동일하다. 그러나 정부의 방안은 통일국가의 모습으로 북한과 합의를 통해 연방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 반면에 필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통일방안은 연방제가 통일국가의 전단계가 아니라 통일국가의 한 형태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개념적 분석에 기초해 연방제를 통일과정의 한 중간단계로 설정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남북간 합의를 통해 연방제를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정부의 인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물론 일단 연방제로 통일국가를 이루고 난 이후 남북한 국민의 의사의 결집여하에 따라 일원적 국가를 모색하는 것은 미래에 얼마든지 열려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서 "통일접근방안"을 도식화한다면, 1) 평화·협력단계 2) 남북연합단계 3) 통일국가라는 3단계의 개념이 성립된다. 이것을 3단계방안이라 해도 좋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 해도 좋으며, "평화·협력을 통한 민족통일방안"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개념들과 그들이 포괄하는 구체적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역시 '평화·협력'의 단계이고, 또 이 단계를 본격화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기도 한 셈이다. 이 단계는 남한이 연합형성의 선단계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비정치적, 비군사적 남북교류·협력의 차원과 북한이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해온 북한의 대외외교정상화, 군축, 평

화협정체제 등, 평화체제성립과 관련한 정치군사적 차원의 개념들을 의도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이 개념은 연합이라는 상당한 수준의 남북간 정치협상과 경제사회적 통합상태의 성립은 평화협정과 일정수준의 군축에 대한 합의를 포함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과정(peace process)의 진전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

<참고자료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과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²⁵⁾

들어가며

냉전해소와 신질서구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휴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로 가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실질적인 휴전과 군사적 대치의 당사자였던 북한과 미국은 지난 94년 10월 21일 북미합의이후 경수로 건설에 관한 구체적 회담을 진행한 결과 결국 6월 13일 쿠알라룸푸르 회담에서 완전 타결 짓고 2001년까지 북에 경수로 건설을 완성하고 7월까지 북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북미간 북일간 외교정상화가 멀지 않았음을 뜻하고 북미간의 그 동안 적대관계가 경제적 협력관계로 전환해가며 군사적으로는 평화체제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모색은 휴전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평화체제구축을 제의한 바 있으며, 미국도 내부적으로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현실적인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휴전체제의 종식으로부터 출발하고 평화협정의 내용에 의해 앞으로의 방향이 크게 규정받을 것이기에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와 평화협정의 내용, 당사국에 관한 내용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1. 평화협정의 제기배경

1) 정전협정으로는 한반도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휴전협정은 교전당사자가 일정기간, 장소에서 전쟁행위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전쟁의 완전한 중단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휴전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전당사자의 일방적인 무력행사나 선전포고에 의한 적대행위의 재개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다. 그런 까닭에 53년 7월 27일 체결한 휴전협정에는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의 소집을 명시하여 이 회담을 통해 휴전의 종료와 평화의 보장을 이루려 하였던 것이다.

2) 정전협정의 내용은 이미 사문화 되었다.

원래 정전협정에도 전쟁억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안전핀은 마련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조항이 바로 그것

25. 이 글은 95년 3월 31일 종로성당에서 개최된 「평화협정 체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최규엽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에 의해서 발표된 글의 요약이다.

이다.

“정전협정 2조 13항 - KOREA 국경 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 1: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3조 43항 - 중립국의 시찰소조가 남북한 5개 지역에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한다.

4조 60항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당사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발효한 후 3개월 이내에 각기의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는 것이 바로 이 안전판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57년 6월 21일 “한국에 근대병기를 들여오고 군사원조, 한국군 근대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58년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무제한적인 군비확산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그리고 조약 발효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이 철수해야 됨에도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주둔을 영구화시켰고 이와 더불어 1954년 5월 미국 측의 일방적인 철수로 제네바 정치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이 안전장치는 자기의 기능을 이미 오래 전에 상실하고 군사정전위회의는 서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항의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3) 정전협정의 이행기구는 사실상 해소되었다.

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이 94년 4월 28일과 9월 1일을 기해 완전 철수함으로써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군사정전위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미측 스웨덴, 스위스와 북, 중국측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로 구성되었던 중립국감시위원회는 91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열되어 중립위에서 이탈하고 95년 3월 폴란드마저 이 기구에서 물러남에 따라 정전협정의 이행을 담보하고 감시할 기구가 사실상 해소되어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정전협정은 새로운 형태로 대체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94년 12월 미군헬기 격추와 보비 홀 준위 송환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북한과 미국의 정치협상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한 것으로 더 이상 이 기구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음을 현실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다. 이 당시 북과 미국은 장성급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었으나 김정권의 반대로 유보되고 있는 상태이다.

4) 북한의 유엔가입과 북미관계개선은 더 이상 정전협정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남한 측의 조약서명자는 남한이 아니라 UN군사령부였다. 그런데 ① 남북한 UN동시가입으로 이 사령부가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UN사령부는 유엔이 북한을 평화의 파괴자로 낙인찍고 한국에 파견되었다. 따라서 UN신입가입국 자격인 평화애호국(헌장 4조 1항)조항에 따라 북한에 대한 평화파괴자 적용이 철회되어 유엔사령부는 해체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UN사를 해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93년 12월 24일 북한을 방문한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한말은 이의 단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또한 ②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더 이상 정전협정이 존립될 필요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 평화협정과 동북아 정세

평화협정 논의를 규정하는 것은 북미관계 개선, 미국의 신아태전략(EASR), 남한과 주변국의 의도 등이 되겠다.

지난 해 10월 북미 고위급회담 타결 후 진행되고 있는 북미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북미수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북미관계정상화는 필연적으로 상호간을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휴전협정 및 휴전체제의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대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북,미 핵합의 이후로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92년 1월 북한의 김용순과 미국의 아놀드 켄터 당시 동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간의 북미간 최초의 고위급회담 이후로 지속된 북미간 접촉 속에서 북미간의 평화보장체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74년부터 미국을 당사자로 시종일관 휴전협정의 해소와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해왔고 핵합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다. 북한은 자기 체제의 최대위협요소로 미국의 군사위협을 지적하여 왔으며, 이에 맞서기 위한 군사비지출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까닭에 북미관계개선의 핵심적인 문제로 설정하고 관계전진이 되는 현재의 기회에 이 사안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평화보장과 통일을 위해서 평화협정체결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핵합의가 진행되던 지난해 4월부터 체계적으로 정전협정을 무력화해 왔으며 평화협정체결의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 미국은 최근에도 공식적으로는 휴전체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헬기사건의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북한과 직접 접촉했던 점이나 94년말 미국무성이 “한국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던 점, 그리고 지난해 12월초 미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가능성’ 보고서 등으로 볼 때 표면적인 입장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휴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가는 상황변화에 따른 저울질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현 상황변화의 다른 하나의 규정요소는 올 2월 말 미국방부가 발표한 미국의 신아태전략(EASR)이다. 신아태전략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에는 ‘1)주한미군(3만 7천)을 포함한 10만명규모 아시아주둔 미군의 현상태 유지와 지역 안보체제 강화 2)대북 지상군 주력은 한국군, 미국과 일본은 전략 해 · 공군과 정보수집을 주로 담당 3)한미방위동맹 유지 4)남북평화협정 체결 5)한국에 국방비분담 증액과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구’ 등이 있다. 금번 미국의 전략은 부시 행정부 이래로 줄곧 강조되어온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사활적 이해를 더욱 강조한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도 미국의 강력한 지위와 적극적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는 정치철학을 반영·특히 금번 전략의 입안자인 조셉나이 미 국방차관보의 정치철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미국의 힘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고 있다. 신전략은 이러한 미국의 의지를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군사전략이다. 그러므로 신전략의 핵심내용은 ‘기존의 동맹국 및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개입과 과거 비우호국 및 적대국과의 관계개선을 확대하는 확대전략을 병행구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개입과 확대를 통하여 향후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는 전세계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미국이 담당했던 역할을 수행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신전략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93년 미국과 아태지역의 교역량이 3천7백40억 달러이며 미국민 2천8백만의 고용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과 확대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신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면 첫째 신전략은 주한미군의 감축계획(년 · 워너 수정안에 따른)을 전면 폐기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변화(한국방어에서 주도적 위치에서 보조적 · 지원적 위치로, 한국방위보다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균형자 역할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특히 EASI 2(92년에 발표된)의 주한미군 감축계획 3단계(1996-2000)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의 궁극적 목표로 - 물론 북한의 위협정도, 한국의 억제력 수준같은 상황에 따른다는 조건이 있지만 -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설정했었는데 신전략에 의한 수정으로 불투명하게 되었다. 또한 신전략은 위 2)의 군 체제에서처럼 한국군을 한미일 연합군체제에 보다 깊숙이 편입시켜 미국의 군수이익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 지상군중심의 편중된 운용으로 한국군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예측을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신전략은 확대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북아에서 이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국은 제네바합의 이후로 과거, 동북아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설정했던 북한의 공세적 전략, 미사일·핵개발 등의 문제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재래식 군사력의 군축문제를 현실적인 과제로 제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전략에서 남북평화협정체결과 지상군을 한국 주도로 재편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결국 북미관계 개선과 신전략에서 드러난 미국의 구도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과의 관계진전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구축의 필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동북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확대라는 보다 크고 중요한 목표에 복속되는 하나의 사안 정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문제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요구나 의사에 합치되는 양상으로 현실화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남한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때 미국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 미국의 힘을 활용하여 북에 대한 압박과 대화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정책을 구사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평화협정문제에 대해서도 당분간 동일한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는 평화협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나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평화체제논의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려 할 것이고 미군문제를 평협체결 과정에서 부차화시킴으로써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방한당시 리펑 중국총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서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하고 중국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북한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평화체제구축에 소극적인 한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중국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려면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본과 러시아의 견제라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앞으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구사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획득한 외교적 성과를 가시화해 당사자로 참여하려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 외교의 총적 목표는 경제력에 걸 맞는 정치, 군사대국화이다. 이는 두 가지 정책을 담고 있는데 그 하나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며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확대이다. 이를 위해 북일수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군사력의 절대감축이 아닌 현상유지적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려는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6자안보포럼 등을 제안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추인과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는 외무장관 코지레프의 '러시아는 한 개의 눈만이 아니라 두 개의 눈을 아시아로 돌려야 한다'는 발언에서 보이듯 적극적인 동북아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친한정책으로 이 지역의 재편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함으로 인해 8자회담을 제안하고 북한과의 소원해진 관

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고 제기할 자격도 없는 바다자간 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남북한 동시외교와 평화체제에 대한 추인을 통해 영향력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러 국내적인 어려움 때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3. 평화협정의 내용

평화조약(협정)의 내용은 일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나 통상 일반조항으로 적대행위의 종료, 점령군의 철수, 압류재산의 반환, 포로의 송환, 조약의 부활 등이 있고 특수조항으로 손상의 배상, 영토의 할양, 요새의 파악, 전쟁전범자 처벌 등이 포함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런 상례에 근거해 볼 때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크게 ① 적극적이고 완전한 평화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호간 적대적 군사행위의 완전중단과 한반도에 집중된 비현실적인 병력 및 무기의 감축, 도입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군축에 관한 내용, ②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실현에 관한 내용, ③ 한국전쟁의 주요당사자이면서 유일하게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지위, 역할변화 및 철수에 관한 내용, ④ 남북관계의 성격규정과 통일문제에 대한 담보의 내용, ⑤ 평화협정체결에 따라 남북이 체결하고 있는 각종 군사조약의 평화협정에 기초한 조정과 폐지에 관한 내용, ⑥ 이를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과 기구 및 그 실행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져야 하며 기타 부속적인 내용이 설정되어야 한다.

전쟁전범자 처벌이나 영토의 문제 등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특수성상 소모적인 논란을 초래하여 평화협정체결 자체를 요원하게 할 수 있으므로 평화협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적대적 군사행위의 완전중단과 군비축소

- a) 적대적인 군사행위를 완전중단한다.
- b) 휴전선에 배치된 군사무력을 후방으로 철수한다.
- c) 군병력이 통상 전체인구의 절반으로 설정됨으로 남북각각은 30만으로 감축한다.
- d) 동수감축이 아닌 절대감축을 실행한다.
- e) 인원의 감축만이 아닌 군비의 상호균형과 절대감축을 실현한다.

② 한반도에 비핵지대화를 실현한다.

- a) 비핵화선언에 근거해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를 철거하고, 이를 확인한다.
- b) 핵무기의 제조, 반입, 저장, 운반을 전면 금지한다.

③ 국제연합군사령부는 해소되고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 a)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현 유엔군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철수해야 한다.
- ※ 1975년 제 30차 유엔 총회에서는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해소와 주한미군 철수가 결의된 바 있다.
- b)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북한과의 적대행위가 종료되고 남북이 평화를 보장하는 군축을 실행하는 것에 따라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 c)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는 남북이 군축하는 것에 비례해서 실시되며 완료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완성한다.

d) 한미연합사는 남한의 군작전지휘권을 완전반환해야 한다.

④ 특수한 남북관계규정과 통일의 보장이 담겨야 한다.

a) 교전단체였던 북한이 유엔에 이미 91년에 가입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국가로써 인정된다.

b) 남북은 합의서에 언명한대로 남북관계가 통일로 가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임을 인정한다.

c) 유엔과 미국(주변국)은 이를 지지한다.

⑤ 남북상호간에 체결한 군사동맹은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재편한다.

한-미간, 조-중간에 체결된 군사조약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과 아울러 군사 자 동개입조항등을 변경한다.

⑥ 위의 조항을 이행할 조직을 구성한다.

a) 평화협정체결의 당사국으로 평화위원회를 구성한다.

b) 위 평화위원회에서 위 조항을 이행한다.

c) 위 평화위원회는 평화협정체결이행을 강제할 권한을 갖는다.

d) 평화협정이 완전이행되는 시점에서 위 위원회는 해소한다.

e) 위 평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감시를 위한 중립국평화위원회를 구성한다.

⑦ 기타

a) 인도적인 조치로 50년 전쟁당시의 포로송환과 미군유해의 완전송환을 확인한다.

b) 평화협정 이행임무를 위배하는 것에 대한 강제적 사법처리 조항을 설정한다.

4.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1) 평화협정 당사자에 대한 북한의 주장

북한은 62년 10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남북한 공격불행사에 대한 평화협정체결을 주장 하였다. 63년 9월에는 공화국 창건 15주년 기념보고를 통해 미군철수의 조건 아래 남북이 서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다. 72년 1월 김일성주석은 “우리는 남북평화협정을 맺고 남조선 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킨 조건에서 남북조선의 무력을 대폭 줄일 것을 주장한다”고 하여 평화협정체결 후 미군철수의 입장을 밝혔다.

74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는 조미평화협정을 주장한다. 이 회의에서 허담은 “북과 남 사이의 대화의 전 과정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는 긴장 상태를 가지고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도대체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족 의 내부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데 대하여 호상합의한 지 만 2년이 가까워지는 오늘날에도 남조선이 미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 놓여 있고 일본군국주의 제침의 활무대로 되고 있으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외세의존 정책을 버리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그에 더욱 매달리고 있는 사실은 그것을 논의할 여지 없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군사적 대치상대의 해소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아무리 논의하여도 의의가 없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조건 아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실히 보장할 만한 실천을 가진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응당합니다”고 보고했다.

평화협정이 남북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법률적으로 보아도 타당성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아무 실권도 못 가진 식민지 고용병들과 마주 앉을 수 없다(95.3.9)”고 지적하면서 남한 배제입장을 강력히 드러냈다.

2) 북한의 주장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박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남한 정부의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전협정 서명당사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조약의 당사자는 ‘법인’이어야 함으로 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는 ‘법인’인 UN(헌장 제104조) 자체이며, UN의 ‘기관’인 UN군사령부나 그 ‘담당자’인 사령관은 될 수 없다. 그리고 협정의 서명자는 UN군사령관이거나 미국대표가 아니다. 북한은 ‘UN군사령부를 대표한 미합중국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의 범리를 오해 또는 혼동한데 지나지 않는다. 조약을 체결하는 ‘대표’는 자신을 임명한 정부나 국가의 이름을 현명 하고 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정 서명자인 마크 W. 클라크 미육군대장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이 라고 서명함으로써 UN의 대표임을 현명하였을 뿐, 미합중국의 대표로 서명한 바는 없다.

둘째, 한국은 UN군 성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은 직접 UN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UN군에 작전지휘권 이양공한(50.7.15)을 통해 UN군사령관이 서명 한 정전협정에 참여, 그 효력을 준수, 이행하고 있는 실질적 전쟁당사자이다. 이양된 작전지휘권 속에는 정 전협정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미평화협정 요구의 부당성에 대하여

미국이 협정의 서명자라는 주장은 ‘대표’의 범리에 명백히 모순될 뿐 아니라,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정전협 정 서명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제관례상 북한주장의 논거는 타당성이 없다. 정전협정은 그 전문에 “이 조약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 UN군사령관의 협정 체결권 이 군사적 사항에 한정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평화협정은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교전당사자간의 명시적 합의로, 정치적 조약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한국이 UN총회 결의(53.8.28)에 따라 제네바에서 열린 평화회의(54.4)에 참석한 것도 평화협정의 당사자임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의도에 대한 남한정부의 견해

국제법상의 범리나 현실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지난 73년까지 한국과 의 평화협정을 요구하다가 그후 대미평화협정 요구로 전환한 데서도 드러난다. 북한은 지난 73년 미국과 월맹이 파리에서 「베트남전 종식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을 체결, 미군을 철수시킨 데 고무, 그 이듬해인 74년 미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대미평화협정을 제의(3.25)하게 된 것이다. 즉 북한은 베트남의 사례에 고무 받아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남한정부의 분석이다.

3) 최근 남북한의 입장 변화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현행 정전협정으로부터 평화협정의 사이에 해당하는 ‘중간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연구소의 방북단이 95.2.25일 밝혔다. 방북 단은 95년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의 당 및 정부 고위인사들과 면담하였고, 단장은 김영진 교수(조지워싱턴대 교수·동아연구소장)이다.

김교수는 “북한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북미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의

핵심요인들은 현시점에서 평화협정이 불가능할 경우 '중간적인 조치'를 검토해보면 어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측은 그러나 그 '중간적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설명하지 않고, 앞으로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자리에서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송교수**는 말했다.

남한정부 역시 평화협정은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여 평화협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입장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남북한 직접협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자격확인 협상이 필요하고 국내법의 정비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또 유엔 내에 남북한간 '남북한 협력위원회'를 구성, 상호협조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이다.

둘째, 휴전당사자(한국.북한.미국.중국) 4자회담(2+2)으로 평화보장 관련회의를 가지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최근 방한한 이붕 중국 총리의 "남북한을 포함한 관계 각국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발언과 끝이어나온 한 외무부장관의 "선 남북 평화협정 후 미중확인"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방안에는 유엔평화유지군(PKO)의 비무장지대 국제적 감시, 군축 등이 논의되어야 하며 남북한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과 체결한 동맹조약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까지 담겨 있다.

셋째, 남북한이 각 분야(군축 3통협정, 교육문화협정 등)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이는 평화협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들 방안 가운데 외무부는 두번째 방안인 2+2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미국과 남북한에 의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남측 당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남북쌍방 당국은 현재 한반도의 남북 양지역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야 평화보장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측 당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미국이 평화협정을 보장할 실질적인 실력을 가진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문제는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평화협정은 내용상 전쟁상태로 점철된 과거의 적대적 관계의 법적, 제도적 청산과 동시에 평화협정에서 규정하는 제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함으로써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이행문제까지를 내포하는 것이다. 휴전협정의 조인 당사자가 평화협정의 조인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 역시 휴전협정체결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달라진 국제환경에 의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성을 띤 문제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통일의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통일문제에 실질적인 정치 군사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관련국은 미국과 남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전쟁의 참전과 휴전당사자이고, 아직까지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협정의 당연한 당사자이다. 이것은 당사자 문제의 초점이 남한의 당사자 자격 유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참가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논의들이 대부분 남한정부의 당사자 자격에 대한 시비였다. 이러한 논의는 남한정부가 당사자 자격이 있으면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남한정부가 당사자 자격이 없으면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은연중에 남한정부가 당사자 자격이 있으면 미국은 불참해도 된다는 논리를 만든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은 미국의 당사자 문제이다. 미국이 명백한 당사자이므로 미국이 참가한 상태에서 남한이나 중국의 자격여부를 논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가한 중국인민군을 1957년에 이미 철수하였고, 그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을 당사자로 참가시키는 것은 불필요할 뿐이고,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일본 등 주변국까지의 개입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남한은 65만의 병력을 가지고 북한과 대치해왔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중요한 담보자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남한은 지금까지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했고, 아직도 평시작전통제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을 약속하였으므로 남북한의 관계는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불가침과 군축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남한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자격 유무에 대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불가침과 군축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남한정부가 군사적 대결의 한 주체임을 상호인정한 것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이행을 통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상을 고려할 때 평화협정은 결국 미국이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5. 결 론

1)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의 분명한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현재의 휴전체제는 언제든 전쟁의 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불안정한 체계이고 남북한의 군사대결을 심화시켜 온 근본적인 원인이다. 또한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북미관계개선의 추세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휴전협정은 즉각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미국은 휴전체제를 존속시키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의 분명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지속시키는 대결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평화협정을 통해 매듭지어져야 한다. 미국 측이 현재 표방하고 있는 자신을 제외하고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① 미국은 한국전쟁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지휘권을 포함하여 한반도에 실질적인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원인제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②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간에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군축을 실현하는 경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존재, 월등한 정보통신력에 기반한 미국의 해공군력, 한국군의 군현대화(병력감축과 군사력의 질적 현

대화) 등의 요인으로 북한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는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요원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2) 한국정부는 군사전권의 완전회복으로 자주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평화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와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평화협정체결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실현은 그 누구도 아닌 남과 북이 당사자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군사령관에게 귀속되어 있는 조건에서 평화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전략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또한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한 어떠한 설득력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문화되고 있는 정전협정체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미,일에 연속적이고, 한반도 평화보장에 역행하며, 한국군의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미국의 신야태전략(EASR)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당사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부당한 방위비 분담 증액요구나 한반도에서의 공격형 무기의 증강과 반입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이 되어도 상당기간 현 수준의 주한 미군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새로운 군사정책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의 대부분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미국의 정치, 군사적인 이익과 무관하지 않는데도 방위비 분담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한미군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땅과 시설들에 대한 주둔비를 지불하지 않는 고사하고, 주둔비용을 증액하라는 요구를 한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최근 신문에도 보도되었듯이 한반도의 평화협정문제가 거론되는 이때 주한미군에 공격용 무기의 추가 도입과 증액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데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은 옹당히 재조정되고, 궁극적으로 철수되어야 하며, 미국은 부당한 방위비 분담 증액요구와 무기반입을 중단해야 한다.

4) 한반도 분단과 휴전체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관련국들은 우리 민족의 평화실현의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

한반도가 분단되는 과정, 그리고 휴전체제가 장기화된 과정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련국들은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사를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관련국들이 평화협정체결과 그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적극 지지하고 보장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실현의 첩경이며 우리 민족에 대한 옹당한 책임이기도 하다.

<참고자료2>

연방제의 이해를 위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26)

1. 각 통일방안 비교

비 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 연방제안	김대중 3단계통일방안	문익환 목사 통일방안
단 계	3단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1 또는 2단계 *낮은단계의 연방 *완전한 연방	3단계 *공화국연합 *연방 *완전통일	3단계 *낮은단계의 연방(국가연합과도 다르지 않다) *완전한 연방 *지자체에 기초한 연방
원 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방안합의 주체	정부	정부, 정당, 사회단체	정부 국민투표로 보완	정부, 정당, 사회단체
통 일 성 격	체제통일	민족통일	체제통일	민족통일
현 시기 통일정책	당국자회담, 경험 우선	대민족회의 소집	교류협력, 상호개방우선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2.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적 역량이 있어야 하겠지만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이

26. 이 자료는 전국연합 자주 통일 위원회에서 발간한 '연방제의 이해'(95년 8월 발간) 중 보론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전국연합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토론을 위한 참고 자료임을 밝혀둡니다.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은 분단상태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단상태를 규정하고 있는 인위적인 법, 제도, 장치 등에 대한 일정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남북간에 통일국가 수립에 대한 논의는 지극히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설사 통일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의 조건이란 실질적인 통일합의를 가능케 하며 통일국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담보라고 볼 수 있다.

통일의 조건이란 그간의 분단사에 비추어 볼 때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과 통일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애물을 청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반세기의 분단사는 달리 표현하면 남북이 서로를 괴뢰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분단을 제도화하고 공고화 해 온 과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통일을 하려면 우선 상대방을 인정하는 공존의 자세부터 가져야 하며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과거의 분단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을 막론하고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러 통일방안들은 이에 대해 '선결조건' 혹은 통일의 전단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모두를 통일국가 수립 이전의 과제란 점에서 '통일의 조건'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각 통일방안이 담고 있는 '통일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비교해 보고, 통일국가를 올바르게 수립하자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 보겠다.

1) 통일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작전지휘권 반환

그동안 제출된 통일방안들과 각국의 통일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가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선결적 과제란 판단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평화협정 체결, 정치·군사적 주권의 회복이다.

통일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맞게 진행하려면 통일국가 수립 이전에 통일국가를 담보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즉 통일국가가 외세의 개입없이 평화적으로 민족적 대단결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수립되는 것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각국의 연방국가 수립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정한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되어야 통일국가가 수립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의 조건은 통일국가 수립의 객관적 조건을 말한다. 특히 여기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기본적 과제로 한정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남과 북이 분단된 이래 반세기 동안 분단 체제가 굳어져 왔고 그 과정은 우리 민족이 조속한 통일을 실현하기 어렵게 하는 객관적인 장치들을 형성해 온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한반도의 현실적 조건에서 통일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우선 통일 실현을 가로막는 냉전의 유물인 분단체제부터 청산해야 한다. 분단체제를 통일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통일의 선결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선결 조건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평화 협정의 체결되며, 전시 작전 지휘권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어야 올바른 의미에서의 통일합의가 가능하며 통일국가 수립의 과정을 담보할 수 있다. 물론 통일국가를 수립하려면 많은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조건들중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통일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도 있으며 또 다른 문제의 해결과 연동되어 풀리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 인사 석방 등의 요구 중에서 통일 인사 석방은 물론 중요하지만 통일 인사가 석방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면 통일인사의 석방과 민족대단결운동의 합법화가 가능한 문제로 된다. 이렇게 하나가 해결됨으로써 다른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형성되는 것을 통일의 선결 조건으로 보고, 그 나머지 문제들은 통일을 위한 조건 조성을 위한 요구 사항 정도로 그 지위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다.

(1)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을 방해하는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철폐 문제는 통일을 위한 대화의 진실성과 책임성을 가리는 시금석이다. 여기서 국가보안법은 핵심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는 교류와 대화의 고리이다. 상대방을 이적시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상대방과의 통일대화가 불가능하며, 대화를 한다고 해도 신뢰에 기초한 대화가 될 수 없으며 통일을 위한 자유로운 대화를 발전시킬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정부 당국 중심의 통일과정, 통일방안만이 가능하며 전민족의 참여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조국통일이 곧 7,000만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때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민족대단결 실현의 조건이 마련되고 통일을 위한 7,000만 민족의 주체적 노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통일을 위한 일체의 노력을 탄압했던 안기부를 비롯한 공안기관들의 안보논리를 극복하고 통일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의 주된 내용은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적 독소조항을 철폐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하는 것과 북의 체제를 고무 찬양하는 것을 이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첫째, 둘째의 내용은 현재의 남북관계의 현실에도 맞지 않아 개정이 불가피한 내용이다. 북한이 이미 유엔에 가입하였고 남북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경제인을 비롯하여 정부차원의 대화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국가보안법은 이런 현실과 상충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연합을 실현하려고 해도 국가보안법은 이에 상충된다. 따라서 냉전유산인 국가보안법은 그 반통일적 성격으로 인해 폐지가 불가피하다.

(2) 평화협정 체결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은 전쟁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이다.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자면 냉전대결의 산물인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선결적이다. 평화체제 마련의 핵심은, 총소리만 나지 않았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전시 상태인 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핵심 과제는 분단과 전쟁의 당사자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휴전협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통일을 위한 어떤 합의도 불안정한 것이며 한 손에 총칼을 들고 마주 앉은 통일논의란 그 자체가 자기 모순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통일은 지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통일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이해와 갈등할 경우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에 시달릴 수 있음을 94년 북핵 사건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북·미, 그리고 남한 정부까지 포함된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통일과정과 통일국가 수립이후에 발생할 수 있

.....

는 남북 및 통일국가와 미국간의 갈등을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남북예멘의 경험을 보면 그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물론 예멘의 경우는 북예멘이 남예멘을 흡수통합하려 했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이었다는 점에서 연방제 방식의 통일과 그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통일과정에서의 군축과 민족통합군의 창설 과정은 불가피하게 군부내 기득권 세력의 권한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의 반발을 견제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주체적 통일역량을 준비하는 것이다. 후자의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전쟁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고 평화구조를 보장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핵심적 과제이다.

물론 군축과 주한 미군 철수의 문제들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그 해결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지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군사적 주권의 회복(전시 작전지휘권의 반환)

외세 의존 정책의 포기는 남북 양 당국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 능력과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다. 한반도와 같이 열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곳에서, 통일 문제는 열강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의 확보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특히 분단 반세기의 역사적 경험은 이 조건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남북간에 채택된 합의서가 외세의 압력에 의해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리고 민족합의보다 국제공조라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으로 되는 상황에서는 통일은 먼 훗날의 일일 수 밖에 없다.

외세 의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과 정치·외교적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의 경우 군통수권의 핵심인 군의 전시 작전지휘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가진 자주적 통일국가의 중앙권력을 세우려면 최소한 군의 전시작전 지휘권이 반환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

주한 미군의 주둔 문제는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다루어 질 것이며 또한 군 전시 작전지휘권이 반환되면 점령군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고 그 존재 이유도 상실되어 국민적 요구에 의한 점차적인 철군이 불가피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에 동북아 지역의 역관계 변화에 따라 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세 가지 조건의 현실성

이 세 가지 조건은 어떠한 통일 방안을 가진 세력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가연합의 실현을 통일의 상으로 보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평화협정의 체결, 국가보안법의 철폐, 그리고 군 전시 작전지휘권의 반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현재 남북간의 교류와 정부 당국 간의 대화도 국가보안법에 사실상은 상충되는 불법적 행위이며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이런 교류를 통치권 차원의 문제로 해석하는가 하면 신고하면 가능하다는 법논리와 모순되는 임시방편의 대처를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정부나 여당내에서도 국가보안법의 이런 요소에 대한 개정

.....

의 목소리가 높다.

평화협정의 체결 문제도 현재 북한과 미국을 비롯하여 남한정부도 어떤 형태로든 휴전협정을 대체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또 이미 냉전시대가 해체되고 한반도에도 그 해체작업이 본격화되는 조건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가능한 문제이다. 현재의 한반도 주변정세에서 평화 협정 체결은 새로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고리이므로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현재 평화협정 체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당사자 문제이며, 또 협정이 얼마나 공고한 평화체제를 보장할 것인가 하는 협정의 내용의 문제이다. 구체적 문제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평화협정 체결 자체는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군사 외교적 자주권을 갖는 문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휴전상태인 현재 상황에서 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을 반환하는 문제가 일부 보수적 국민대중에게는 북의 위협으로부터 무장해제당하는 다소 위협한 발상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으로부터의 전쟁 위협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게 되므로 작전지휘권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군부도 작전지휘권을 자신들이 갖게 될 경우 한국군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게 되므로 반대할 명분도 실리도 없게 된다.

(5) 세 가지 조건의 상호 관계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은 일시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 각각의 상호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의 평화적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이 가장 먼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협정 체결은 앞으로의 북미관계 개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전쟁의 일시 종전인 휴전상태는 어떤 형태로든 평화체제로 바뀌어야 하므로 95년을 전후한 시기에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이후에 본격적인 협상에 오를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논의와 함께 남북관계도 이전의 적대관계에서 새로운 질서 수립에 맞게 재편될 것이며 특히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적으로 불법단체가 아닌 조건에서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현실과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 일정에 오르게 되고 우리 민족의 통일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의 적극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혹은 남북화해와 교류에 맞는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민족민주운동을 비롯한 통일역량은 정치·군사적 자주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운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평화 협정 체결문제와 함께 한국군의 자주적 지위문제와 주한 미군문제가 분단구복과 관련하여 쟁점화될 것이며, 이는 통일로 전진하는 도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과거청산의 핵심적 문제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위의 선결조건인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군 전시 작전지휘권 반환은 상호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세 가지 선결조건이 대중적으로 제기되는 시기에 이에 대한 해결은 소시기마다 주요한 과제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세가지 과제의 연관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포괄적 동시해결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주의깊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평화협정에 소극적이면서 국가보안법철폐에 적극적인 미국의 입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미국이 국가보안법의 철폐에 적극적인 것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는 평화협정문제를 동시에 제기해나가야 한다.

3. 연방과 국가연합의 접근 가능성

일반적으로 민족간, 국가간 통합모형으로 연방(Federation)과 연합(Confederation)을 설정할 수 있다. 연방은 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주도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각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며, 대외적으로도 단일한 주권국가를 표방한다. 반면 연합은 지역정부간 협의체적 성격이 강하고 대외적으로도 단일 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기존 연합이나 연방 개념은 공통된 사회경제제도에 기초하여 다민족간, 다국가간 통합형태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의 특수성-하나의 민족이면서도 두개의 체제의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통합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창조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북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경우 연방개념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영문표기가 Democratic Confederational Republic of Korea로 하여 연합-Confederation-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단일체제에서의 연방개념과는 달리 두 체제를 전제한 연방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통일방안을 정립함에 있어 연합이나 연방의 모형은 한 유형으로 채택될 수도 있고 절충적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연방국가의 창설에서 핵심적 과제의 하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력배분의 문제이고, 중앙정부의 권력집중도,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설정할 수 있다. 91년 북의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80년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서 한발 후퇴하여 지역정부에 보다 많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부여하는 '느슨한 연방제'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안과 '연방제'안이 서로 절충되어 하나의 방안으로 되거나 '남북연합' 단계에서 '연방제' 단계로 발전하는 단계적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남북연합에서 연방제로 발전하는 방안' 또는 '느슨한 연방제에서 강력한 연방제로 발전하는 방안'이라는 단계적 방안이 현실적 가능성으로 검토되는 이유는 아직 남과 북의 단결의 정도가 높지 못하고,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창출과 지역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적지않은 준비기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민족군대의 창설이나 지역정부와 타국가에 맺고 있는 군사조약에 대한 개,폐문제, 중앙정부의 단일한 외교권 확립 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방안의 합의 가능성은 89년 문익환 목사와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간의 공동성명에서 '연방제 방식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합의한 사실이나 91년 노태우 대통령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을 한데 묶을 수 있고, 국가연합→연방→정치적 통일의 3단계를 밟을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연합'안과 '연방제'안은 통일의 출발점과 과제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남북연합'안은 체제통일을 통일의 완성이라고 보는 견해에서 출발하여 '남북연합' 단계의 주된 과제를 체제의 통일화를 위한 상대방의 변화 유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도로써 교류,협력을 통한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연방제'안이 설정하고 있는 통일국가의 상과 그 실현과제와는 상충되는 것이다. '남북연합→연방제'안의 경우도 남북연합에서 연방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강제력이 확보되지 못하면 남북연합 단계가 장기간 지속되어 분단구조의 고착화나 체제통일을 위한 상호 경쟁유발이라는 대립의 격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통일방안의 합의는 이를 실현할 주체형성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연합과 연방의 합의는 남북 쌍방이 통일의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통일여지의 확인, 그리고 이를 담당할 민간통일운동세력을 포함한 주체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제2부